



2026. 5

국회연구조정협의회 | 공동연구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IV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Ⅳ」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2026. 5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IV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총괄 | 박 미 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기획·조정 | 채 지 영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정보과장

설 혜 윤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정보과 사서사무관

작성 | 이 주 연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정보과 주무관

김 태 현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정보과 주무관

이 보 경 국회도서관 정치행정정보과 주무관

천 화 영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정보과 주무관

서 정 경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문의 :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정보과 | 02) 6788-4448 | legis2@nanet.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IV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2026. 5.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연구조정협의회에서 선정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하여 국회 소속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간되었습니다.

연구진

구분	기관	담당자	담당 업무
주관기관	국회 예산정책처	이병철 예산분석관	(연구총괄) •총론 •포용적 금융정책 추진현황 분석 •채무조정제도 분석
		황진솔 경제분석관	•정책서민금융 공급 현황 분석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 사업 분석
		이두영 경제분석관	•정책서민금융 공급 현황 분석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 사업 분석
참여기관	국회 입법조사처	박효민 입법조사관	•은행권 금융접근성 개선 제도연구
		장영진 입법조사관	•포용적 보험 활성화 제도연구
	국회 도서관	이주연 주무관	•일본의 포용적 금융 정책 사례
		김태현 주무관	•일본의 포용적 금융 정책 사례
		이보경 주무관	•프랑스의 포용적 금융 정책 사례
		천화영 주무관	•미국 · 영국 · 호주의 포용적 금융 정책 사례
		서정경 해외자료조사관	•중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사례

서 문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와 연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했으며, 소상공인 또한 누적된 부채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고령층·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민생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서민금융 정책은 자금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위기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금융의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 전반에서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자율적 채무조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소외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법」 개정 논의를 통해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은 공동으로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시리즈는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금융 접근성 강화,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 정책 마련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융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 또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단 한 사람도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국회의장 우 원 식

요 약

제1장 미국

■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1977년 미국 연방의회는 은행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소외시킬 수 있는 중저소득 지역 주민에게도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CRA)」을 제정함
- 1994년 낙후 지역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DFI) 기금이 미국 재무부 내에 설립됨
- 2009년부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금융소외계층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은행 계좌 미보유 및 부분보유 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용 금융 과제를 해결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 「경제적 포용 전략 계획(Economic Inclusion Strategic Plan)」을 수립함
- 2023년 미국 연방의회는 「2023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 제E부(Division E) 부속 공동 설명서(Joint Explanatory Statement)를 통해, 재무부에 범국가 차원의 포용적 금융 전략 수립 과업을 부여함
- 2024년 10월 재무부는 「미국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Inclusion in the United States)」을 발표함

■ 정책 추진 체계

- 미국은 재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함
- 재무부(정책 총괄) - 재무부 소비자정책실(정책 수립 및 실행) - 재무부 산하 금융문해력 교육위원회(금융 교육 전략 수립 및 범정부 협의) - 연방준비제도(금융 인프라 제공) -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소비자 보호 및 시장 감시) - 연방예금보험공사(예금자 보호, 포용적 금융 정책 연구) 체계로 이루어짐

■ 주요 정책 사례

- (계좌 접근성 제고)뱅크 온(Bank On)은 금융소외계층의 은행·신용협동조합 표준 계좌 보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금융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뱅크 온 인증 계좌는 계좌 개설 예치금과 수수료가 낮음

- (취약계층 대출 지원) 미국 재무부 산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기금은 저소득층과 낙후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기업, 주택 및 부동산 개발, 지역 사회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저렴하고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2021년 소액 대출 프로그램(Small Dollar Loan Program)을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고금리 소액 대출 의존을 줄이고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뒷받침함
- (사적 채무조정 제도) 미국의 채무자 구제 절차는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신청 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적 채무조정은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해 진행됨. 가장 큰 사적 채무조정 단체는 미국신용상담재단(NFCC)으로, 여기에 속한 채무조정 기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채 상환 조건을 협상함
- (금융 교육) 금융문해력교육위원회(FLEC)를 중심으로 재무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연방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됨. 금융문해력교육위원회(FLEC)는 금융 교육 웹사이트 'MyMoney.gov'를 운영하여 관련 금융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은 교육 대상을 구분하여 맞춤형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또한 학교 금융 교육은 각 주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일부 주에서는 금융 이해력 교과목 이수를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 요구함

제2장 영국

■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포용적 금융을 중요한 의제로 다룸. 1999년 기본 계좌(basic bank account) 도입을 제안하고, 2004년 1억 2,000만 파운드 규모의 포용적 금융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5년 포용적 금융 태스크포스를 발족함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포용적 금융을 정책 의제로 삼고, 2017년 연금 및 포용적 금융 담당 장관(Minister for Pensions and Financial Inclusion)직을 신설함. 또한, 2018년부터 연 2회 포용적 금융 정책 포럼(Financial Inclusion Policy Forum)을 개최함
- 2024년 재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성장 공약(Growth Manifesto)'의 일환으로 영국 최초의 범국가적 포용적 금융 전략 수립을 약속함
- 2025년 11월 5일 영국 재무부는 「포용적 금융 전략(Financial Inclusion Strategy)」을 발표함. 이 전략은 디지털 포용과 은행 서비스 접근성, 저축 지원, 보험을 통한 금융 회복력,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 접근성, 문제 채무 해결, 금융 교육 및 역량 등 6개 분야로 구성됨

■ 정책 추진 체계

- 영국의 포용적 금융 전략은 재무부가 수립 및 총괄하고, 정책 실행은 금융시장 감독기관 및 실행 기구와의 협력체계로 추진됨
- 재무부(정책 수립 및 총괄) - 재무부 내 금융포용위원회(정책 자문 및 실행 관리) - 금융행위감독청(금융시장 감독기관) - 자금융청·페어4올 파이낸스(실행 기구)의 체계로 이루어짐

■ 주요 정책 사례

- (디지털 포용과 은행 서비스 접근성) 취약계층의 계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오픈라인 banking 허브(banking hub)를 350개까지 확대하고, 표준 신분증(Standard ID)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대형 은행과 제3섹터(시민사회단체 등) 간의 시범 파트너십을 구축함
- (저축 지원) 근로자의 저축률 제고를 위해 급여 공제 저축 제도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저축 장려 제도인 '헬프 투 세이브(Help to Save)'의 참여 자격을 완화함
- (보험을 통한 금융 회복력) 페어4올 파이낸스 주도로 주택 임차인의 가재도구 보험(contents insurance)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하고, 정신 건강 취약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접근성과 공정성을 개선함
-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 접근성) 신용협동조합,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등 정책기관을 통해 시민이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문제 채무 해결) 영국은 비영리상담기관 중심의 채무조정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상담 이용률은 낮음. 이에 영국 정부는 자금융청 지원 예산을 2025-26회계연도부터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하고, 자금융청이 지원 예산을 지역 상담 기구들에 배분하도록 함
- (금융 교육 및 역량) 자금융청은 'Money Helper'와 'Money Guiders'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페어4올 파이낸스가 휴면 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금융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함

제3장 프랑스

■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프랑스는 1980년대 금융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계좌 개설권(droit au compte)을 법제화하고, 1998년부터는 무상 계좌 개설권(droit au compte gratuit), 최고 금리 제한(taux d'usure), 압류 금지 예금 잔액(solde bancaire insaisissable) 등 저소득층을 위한 법적 보호 수단을 마련함
- 2013년 「은행 활동의 분리 및 규제에 관한 2013년 7월 26일 법률 제2013-672호(Loi n° 2013-672 du 26 juillet 2013 de séparation et de régulation des activités bancaires)」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용적 금융관측소(L'Observatoire de l'inclusion bancaire, OIB)라는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포용적 금융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음

■ 추진 체계

-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 내 재무총국(DG Trésor)에서 포용적 금융 정책을 수립·총괄하며, 프랑스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포용적 금융관측소(OIB), OIB 산하 과학위원회, OIB 회원 은행, 지역 포용적 금융협의회(CDIF), 예산상담소(PCB), 사회적 협회 및 기구 등이 협력하여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함. 정책의 모니터링은 OIB가 담당함

■ 주요 정책 사례

- (계좌 개설권) 모든 프랑스 거주자 및 해외 거주 프랑스인은 은행 계좌를 개설할 권리가 있음. 계좌 개설을 거부당할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1영업일 이내에 계좌 개설을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은 3영업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해 주어야 함
- (경제적 취약 고객 전용 서비스) 금융기관은 경제적 취약 상태에 놓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월 3유로 이하의 요금으로 특정 서비스(Offre spécifique)를 의무적으로 제공함. 이 서비스는 지급 사고(수표 부도, 잔액 부족 등) 수수료의 월간·연간 상한액을 설정하여 취약계층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함. 각 은행은 자체 브랜드(Facil'Accès, Generis 등) 상품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함
- (소액 대출 제도) 일반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소액 대출 제도를 운영함. 소액 대출 목적에 따라 개인 소액 대출과 사업자 소액 대출로 구분되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이자율이 달리 적용됨

- (채무조정 제도) 부채 문제에 직면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로 과다부채 조정 제도를 운영함.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전담하며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됨
- (금융 교육) 2016년부터 국가 금융 교육 전략인 「경제·예산·금융 교육 국가 전략(Stratégie nationale d'éducation économique, budgétaire et financière, EDUCFI)」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금융 교육을 시행 중임. 이 전략의 목적은 개인을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및 금융 사안을 더 잘 이해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임

제4장 호주

■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호주는 2000년대 말까지 포용적 금융을 공공 정책의 핵심 기조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민간에서 지역 사회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소액 금융(micro finance) 프로그램을 운영함
- 호주 정부는 2009년 민간의 소액 금융 프로그램 중 무이자 대출제도와 세이버 플러스(Saver Plus)를 정부 지원 사업으로 편입하고, 이후 2015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 및 재정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금융 웰빙 및 역량 활동(Financial Wellbeing and Capability Activity, 이하 FWC 활동) 체계로 편입하여, 정부와 민간의 포용적 금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함
- 2011년 금융감독기관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국민의 금융 문해력 향상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금융 문해력 전략(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을 발표함
- 2018년 「국가 금융 문해력 전략」을 「국가 금융 역량 전략(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2년부터 주무 기관을 재무부로 변경함

■ 추진 체계

- 재무부가 「국가 금융 역량 전략」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복지부가 FWC 활동을 담당함. 또한 증권투자위원회와 국세청은 금융 규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음

■ 주요 정책 사례

- (취약계층 대출 지원) 비영리단체인 굿 셰퍼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Good Shepherd Australia New Zealand)는 사회복지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대상 무이자 대출 제도를 운영함
- (저축 지원) 비영리단체 브라더후드 세인트 로런스(Brotherhood of St. Laurence)는 매칭 저축을 통해 교육 관련 비용(직업 교육·훈련 비용, 컴퓨터·교복·교재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세이버 플러스(Saver Plus)를 운영함
- (금융 교육)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국민의 금융 문해력 향상과 개인 재정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Moneysmart'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국세청은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세금 및 연금 제도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Tax, Super+You' 웹사이트를 운영함

제5장 일본

■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1955년부터 후생노동성은 복지정책으로서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복지 자금대출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정책금융공사는 2008년부터 서민·농어민·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함
- 2006년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업법(貸金業法)」, 「출자법(出資法)」, 「이자제한법(利息制限法)」으로 구성된 '신대금업법제'를 공포하고 과잉 대출과 고금리를 규제함
- 2020년 금융청은 「금융행정방침(金融行政方針)」을 통해 단순한 금융 접근성 제고를 넘어 빈곤·소외(장애·고령자 등) 계층을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포용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힘
- 2000년 이후 금융청, 금융홍보중앙위원회, 문부과학성 등 정부 주도하에 금융 교육 지침 등을 마련하여 연령별로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추진함

■ 정책 추진 체계

- 일본은 금융청이 포용적 금융 정책을 총괄하고,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등 정부와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서민금융 제도, 채무자 보호, 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 교육 추진 등 포용적 금융 정책을 수행함

■ 주요 정책 사례

- (서민금융제도) 후생노동성과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주택입주비, 일시 생활 재건비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함. 또한 재무성 소관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사는 서민, 농어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제공함
- (채무자 보호) 2006년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업법」 상의 이자 상한을 15~20%로 인하하고, 대부업 규제를 강화함. 또한 일본신용상담협회(JCCO)는 채무자의 사적 채무조정을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자 감액과 분할 상환 협상을 지원하고 필요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연계함
- (금융 접근성 개선) 고령자 대리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외국인 대상 다언어 금융 이용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 릴레이 서비스 활용 촉진, 우체국 기반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
- (금융 교육) 금융 문해력 함양을 위해 연령별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금융 교육 추진을 위해 2024년 4월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를 설립함

제6장 중국

■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2013년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포용적 금융 발전’이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국가 전략으로 지정됨
- 2015년 국무원이 「포용적 금융 발전 추진 계획(推进普惠金融发展规划)(2016-2020)」을 발표함.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서비스 제공 주체의 다원화, 서비스 범위 확대, 금융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결제 확산 등이 추진됨
- 이외에도 2017년 「중·대형 상업은행 포용적 금융사업부 설립 시행 방안(大中型商业银行设立普惠金融事业部实施方案)」, 2023년 「포용적 금융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실시 의견(国务院关于推进普惠金融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등 포용적 금융 추진을 위한 국가 정책이 발표됨

■ 정책 추진 체계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국 인민은행, 재정부 등이 정책을 설계함. 정책의 규제와 감독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함. 정책 실행은 국유은행, 정책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기술 플랫폼이 이를 증폭시키는 탑다운 방식의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됨

■ 주요 정책 사례

-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 기금) 2019년 9월 중국 재정부는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 기금 관리 방법(普惠金融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을 제정하고 창업담보대출 이자 지원, 포용적 금융 발전 시범구(普惠金融发展示范区)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 기금(普惠金融发展专项资金)을 운영함
- (디지털 포용적 금융) 중국의 디지털 포용적 금융 개념은 2016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됨. 이후 온라인 은행 설립, 인터넷 결제 출현, 빅데이터 기술 결합 등을 거치며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접근성을 크게 확대함. 또한 중국 인민은행은 「2022~2025년 핀테크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높은 수준의 금융 디지털 전환과 현대적 금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텐센트, 미중은행, 광대은행 등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사랑과 보호 공익 프로그램’, ‘정부(政)-은행(银)-보증(担)’ 온라인 금융 보증 서비스, ‘광대 클라우드 결제(光大云缴费)’ 등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목 차

제1장 미국	1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3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4
3. 주요 정책 사례	8
제2장 영국	15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17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18
3. 주요 정책 사례	19
제3장 프랑스	27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29
2. 정책 추진 체계	30
3. 주요 정책 사례	32
제4장 호주	39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41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42
3. 주요 정책 사례	45
제5장 일본	49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51
2. 정책 추진 체계	52
3. 주요 정책 사례	53
제6장 중국	65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67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68
3. 주요 정책 사례	71
참고문헌	77

표 차례

[표 Ⅰ-1] 미국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5
[표 Ⅰ-2] 「미국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 핵심 목표	5
[표 Ⅰ-3] 「미국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 권고 사항 및 관련 조치	6
[표 Ⅰ-4]뱅크 온 전국 표준 계좌(2025~2026) 주요 내용	9
[표 Ⅰ-5] CDFI 기금 주요 대출 분야 및 내용	11
[표 Ⅱ-1] 영국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18
[표 Ⅱ-2] 영국 「포용적 금융 전략」 분야별 주요 정책	19
[표 Ⅲ-1] 프랑스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30
[표 Ⅲ-2] 프랑스 소액 대출 상품 유형	35
[표 Ⅲ-3] 프랑스 에듀크피 5대 전략과제	37
[표 Ⅳ-1] 호주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43
[표 Ⅳ-2] 호주 「국가 금융 역량 전략」 대상별 정책	44
[표 Ⅳ-3] 호주 무이자 대출 종류	45
[표 Ⅳ-4] 세이버 플러스 프로그램 진행 순서	47
[표 Ⅴ-1] 일본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52
[표 Ⅴ-2]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	53
[표 Ⅴ-3] JFC 국민생활사업본부 융자 항목과 지원 대상	55
[표 Ⅴ-4] JFC 농림수산사업본부 융자 항목과 지원 대상	56
[표 Ⅴ-5] JFC 중소기업사업본부 융자 항목과 지원 대상	57
[표 Ⅴ-6] J-FLEC의 연령별 금융 교육	62
[표 Ⅵ-1] 중국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68
[표 Ⅵ-2] 중국 창업담보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 자격	72
[표 Ⅵ-3] 중국 중앙정부가 포용적 금융 발전 시범구에 지급하는 장려·보조금	73

1. 미국

-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 3 주요 정책 사례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미국 정부가 정의하는 포용적 금융이란 개인과 가계가 공정·안전·유용한 상품 및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얻어 장기적으로 금융 회복력(financial resilience)과 웰빙(well-being)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¹⁾

미국의 포용적 금융의 토대는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CRA)」으로, 1977년 미국 연방의회는 은행이 중·저소득 지역 주민에게 대출이나 일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레드라이닝(redlining) 관행²⁾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은행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소외시킬 수 있는 집단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³⁾

이와 더불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낙후·취약 지역 사회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DFI) 설립 운동이 본격화되었다.⁴⁾ 1994년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내 CDFI를 지원하기 위한 CDFI 기금(CDFI Fund)이 설립되고 이 기금은 낙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개발 촉진에 사용되었다.⁵⁾

2006년 미국 연방의회는 연방예금보험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금융소외계층 규모를 파악하고 경제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 수행의 책임을 부여했다. 연구 수행을 위해 FDIC는 은행 계좌 미보유 및 부분 보유 가구조사(National Survey of Unbanked and Underbanked Households)를 수립하고, 2009년부터 2년마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과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⁶⁾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DIC는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 「경제적 포용 전략 계획(Economic Inclusion

1)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2024.10, 3.

2)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 주택소유자대출공사가 도시 지역을 등급화(A~D)하면서 유색인종 거주지를 D등급(위험, RED)으로 분류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3) American Action Forum,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Revisited, (<https://www.americanactionforum.org/insight/the-community-reinvestment-act-revisited/>, 검색일: 2026.4.3.)

4) CDFI Fund, The CDFI Fund: Empowering Underserved Communities, 2022.3.25, 2.

5) CDFI Fund, What are CDFIs?, (https://www.cdfifund.gov/system/files/documents/cdfi_infographic_v08a.pdf, 검색일: 2026.4.3.)

6) FDIC, FDIC's Economic Inclusion Strategy, (<https://www.fdic.gov/news/speeches/2024/fdics-economic-inclusion-strategy>, 검색일: 2026.4.3.)

Strategic Plan)」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모든 미국 가구가 은행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이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⁷⁾

이러한 개별 기관 중심의 가구-은행 관계 형성을 넘어, 포용적 금융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2023년, 미국 연방의회는 「2023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 제E부(Division E) 부속 공동 설명서(Joint Explanatory Statement)를 통해, 재무부가 범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⁸⁾ 금융 소외 지역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든 지역 사회가 금융 수단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4년 10월, 재무부는 미국 연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미국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Inclusion in the United States)」을 발표하였다.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가. 추진 체계

미국은 재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총괄은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담당하며,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은 재무부 소비자정책실(OCP)에서 맡아 세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 교육은 재무부 산하 금융문해력교육위원회(FLEC)가 범정부 협의 기구로 기능하고,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과 협력하여 시행한다. 금융 인프라 제공은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감독은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자 보호와 포용적 금융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7) FDIC, Economic Inclusion Strategic Plan, 2024, 1.

8)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2024.10, 3.

[표 1-1] 미국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구분	기관
정책 총괄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정책 수립 및 실행	재무부 소비자정책실(Office of Consumer Policy, OCP)
금융 교육	재무부 산하 금융문해력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 인프라 제공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감독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예금자 보호, 포용적 금융 정책 연구	연방예금보험공사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자료: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2024.10, i-31. 재구성.

나. 추진 전략

미국 재무부는 2024년 10월 광범위한 연구와 전문가·지역 사회 지도자·업계 대표·기타 연방 기관과의 협의, 대중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미국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모든 미국인의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affordable)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5가지 핵심 목표와 공공·민간·비영리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실행할 수 있는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⁹⁾

[표 1-2] 「미국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 핵심 목표

목표	배경
목표 1: 소비자 필요에 부합하는 거래 계좌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은행 계좌 미보유 및 부분보유 가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가구의 약 4.2%(560만 가구)가 은행 계좌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은행 계좌 미보유율은 인종, 소득, 성별, 장애 여부 등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큰 격차를 보임. 백인 가구와 흑인·히스패닉 가구 간 은행 계좌 보유율은 모든 소득 수준에서 백인 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근로 연령대 장애인 가구(11.2%)는 비장애인 가구(3.7%)보다 약 3배 높은 미보유율을 기록함

9) FDIC, FDIC National Survey of Unbanked and Underbanked Households Executive Summary, 2024, 2.

목표	배경
목표 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신용 상품 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으로, 연방준비제도(Fe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 상품 신청자의 2/3 이상이 요청 금액 전액을 승인받음 - 그러나 저소득층, 흑인·히스패닉계, 농촌 지역 거주자,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접근성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해당 집단의 금융 비용 증가와 약탈적 신용 상품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목표 3: 저축 및 투자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예상치 못한 400달러의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고, 46%는 3개월 치 생활비를 마련할 비상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민간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접근율은 73%, 가입률은 56%였는데, 소득 하위 25%의 경우 접근율이 49%, 가입률은 28%였음
목표 4: 정부 제공·지원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포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는 자격이 있음에도 공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 - 권리성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75% 이상인 반면, 근로 연계형 보육료 지원이나 주택 에너지 지원 같은 재량적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15~20%에 불과함
목표5: 불법·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 시스템 신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미국인은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차별적 대출, 약탈적 상품 표적화, 숨겨지거나 불투명한 수수료 등으로 피해를 경험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거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

자료: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2024.10, i -31. 재구성.

「미국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은 위의 5가지 핵심 목표에 따른 권고 사항과 관련 조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 1-3] 「미국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 권고 사항 및 관련 조치

목표	권고 사항	관련 조치
목표 1: 소비자 필요에 부합하는 거래 계좌 접근성 제고	정책 입안자는 정부 지원금 등의 지급을 소비자가 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정부가 지급금 지급 시기에 맞춰 수수료 없거나 저렴한 거래 계좌 가입 지원
	금융기관은 거래 계좌 상품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개선해야 함	뱅크 온(Bank On) 등을 통해 금융 계좌 접근 장벽 제거
	정책 입안자는 즉시 결제 도입을 장려하고, 금융기관은 정산 시간 단축을 검토해야 함	금융기관이 페드나우(FedNow) ¹⁾ 시스템에 참여하여 소비자의 자금 이용 속도 제고

목표	권고 사항	관련 조치
	정책 입안자는 대면 은행 서비스 제한 지역과 현금 주 사용자를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함	디지털 금융 접근을 위한 광대역 통신망 등 인프라에 투자
목표 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 접근성 제고	금융기관 등은 소비자 동의 하에 대체 데이터를 신용 심사에 활용해야 함	은행 계좌 내역, 임대료·통신비·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활용해 신용 리스크 정밀 파악
	금융기관은 특수 목적 신용 프로그램(SPCP) ²⁾ 을 확대 운영해야 함	연방 정부 지침에 따라 SPCP를 개발하여 금융소외계층에 신용 상품 제공
	금융기관과 정책 입안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금융 상품 구조를 개선해야 함	단기 실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대출 상환 유예 검토
목표 3: 저축 및 투자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제고	정책 입안자는 소비자가 공평하게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함	「SECURE 2.0 법(2022)」 ³⁾ 에 따라 세이버 매치(Saver's Match) ⁴⁾ 등을 도입해 연금 가입자 노후 보장 강화
	고용주는 포용적 비상금 저축 및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장려하고 금융 교육을 지원해야 함	「SECURE 2.0 법(2022)」에 따라 연금 연계 비상금 저축 계좌, 비상시 가산세 없는 중도 인출 제도 도입
목표 4: 정부 제공 지원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포용성 제고	정부는 금융 상품·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을 증진하도록 설계하고 혁신 기회를 발굴·실행해야 함	금융 상품·프로그램이 소비자의 재무 성과를 개선하는지 측정·평가하고 정책 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
	정부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포용적으로 제공하여 가계의 금융 회복력과 웰빙을 증진해야 함	연방·주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포용적 금융 설계와 소비자 보호 규정 준수하는 업체 선정 지원
	정부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전략을 고안·실행해야 함	기술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신청자의 서류 중복 제출 부담 최소화
목표 5: 불법·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 시스템 신뢰 구축	규제 기관은 약탈적·불법적 활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함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법규 준수 보장, AI·머신 러닝 모델의 알고리즘 편향·개인정보 침해 방지 감시

주: 1) 페드나우(FedNow)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3년 출시한 실시간 결제 서비스로, 은행 간 자금 이체와 정산을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소비자가 입금된 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인프라다.

- 2) 특수 목적 신용 프로그램(SPCP)은 1976년 미국 「신용기회균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ECOA)」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신용 상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유리한 대출 조건이나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러나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법 위반 리스크로 인해 금융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2021년 미국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구체적인 요건과 사례를 담은 지침을 발표하고 이후 유관 기관에서 공동 성명과 지침을 내놓으며 금융기관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 3) 「2022년 SECURE 2.0 법(SECURE 2.0 Act of 2022)」은 「2023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 제T부(Division T)에 포함되어 제정되었다. 'SECURE'는 '모든 지역 사회의 노후 보장 강화(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의 약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의 자동 가입 의무화,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고용주 매칭 기여금 허용, 저소득층을 위한 세이버 매치(Saver's Match) 신설 등이 포함된다.
- 4) 세이버 매치(Saver's Match)는 저소득층의 연금 납입액에 정부 기여금을 1,000달러까지 매칭하여 연간 최대 2,000달러의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SECURE 2.0」 법안에 따라 2027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2024.10, 9-31, Consumer Compliance Outlook, Overview of Special Purpose Credit Programs Under the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https://www.consumercomplianceoutlook.org/2022/fourth-issue/overview-of-special-purpose-credit-programs/>, 검색일: 2026.4.3.), 재구성.

3. 주요 정책 사례

가. 거래 계좌 접근성 제고

미국은 은행 계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뱅크 온(Bank On)'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금융소외계층이 수표 현금화 업체, 단기 고금리 대부업체, 전당포 등 고비용의 대체 금융서비스(alternative financial service) 대신 안전하고 저렴한 제도권 금융에 진입할 수 있도록 표준 계좌 보급을 지원하는 전국적 프로그램이다.¹⁰⁾ 2006년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에서 시작되어 개별 도시 단위로 진행되던 뱅크 온은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2012년부터 비영리단체인 도시금융역량강화기금(Cities for Financial Empowerment Fund, 이하 CFE 기금)이 주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 및 지방 정부, 금융권,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실행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¹¹⁾

10)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Banking on "Bank On", (<https://www.stlouisfed.org/on-the-economy/2019/march/banking-bank-on>, 검색일: 2026.4.3.), Bank On, About, (<https://joinbankon.org/about/>, 검색일: 2026.4.3.)

11) CFE Fund, Bank On, (<https://cfefund.org/project/bank-on/>, 검색일: 2026.4.3.)

뱅크 온의 목표는 모두가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은행 또는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¹²⁾ 이를 위해, CFE 기금은 '뱅크 온 전국 계좌 표준(Bank On National Account Standards)'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거래 계좌를 인증하였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기본 거래 계좌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최소 잔액을 채울 자금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높거나 예측 불가능한 거래 수수료, 신분증·신용·금융거래 기록 문제 등 다양하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 당좌예금계좌(Checking account) 개설을 위해서는 2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예치금이 필요하다.¹³⁾

2024년 12월 기준, 1,400만 개 이상의 뱅크 온 인증 계좌가 개설되어 이용 중이며, 미국의 우편번호(ZIP Code) 기준으로 91%에 달하는 지역 분포를 보인다. 3만 6천 개 이상의 금융기관 지점에서 뱅크 온 인증 계좌를 제공하고 있다.¹⁴⁾

개편된 2025~2026년 뱅크 온 전국 표준 계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4] 뱅크 온 전국 표준 계좌(2025~2026) 주요 내용

구분	항목	표준
필수 요건	연방예금보험에 가입된 제도권 금융기관의 계좌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개설 및 관리하는 당좌 예금 또는 선불 계좌
	직불카드	매장 결제·공과금 납부용 무료 직불카드 네트워크 (Visa·Mastercard 등) 제공
	최소 개설 예치금	25달러 이하
	월 유지 수수료	면제 불가 시 5달러 이하, 면제 가능 시 10달러 이하 이며, 단 한 번의 거래(급여 입금, 공과금 납부 등)만 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 두 가지 옵션 제공
	초과 인출· 잔고 부족 수수료	없음
	계좌 활성화·해지·휴면· 미사용·잔액 미달 수수료	없음

12) Bank On, (<https://joinbankon.org/>, 검색일: 2026.4.3.)

13) Forbes, How To Open A Checking Account, (<https://www.forbes.com/advisor/banking/checking/how-to-open-checking-account/>, 검색일: 2026.4.3.)

14)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Bank On National Data Hub: Findings from 2024, (<https://www.stlouisfed.org/community-development/bank-on-national-data-hub/bank-on-report-2024>, 검색일: 2026.4.3.)

구분	항목	표준
	지점 이용	지점 은행은 무료·무제한 제공, 디지털 은행은 ATM 네트워크·원격 입금 서비스 무료 제공
	폰뱅킹 (상담원 연결 서비스 포함)	무료·무제한 제공
권고 요건	데이터 보고	뱅크 온 계좌 데이터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산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에 보고
	계좌 심사	계좌 개설 거절 사유를 사기 이력으로 한정
	계좌 개설 서류	계좌 개설 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및 정부 발행 신분증(지방 정부·영사관 발행 등)을 기본 증빙 서류로 인정
	보완 금융 상품	무료 저축 계좌·합리적 금리의 소액 대출·신용 구축(credit building) 상품 등 제공
	자금 이용 가능 시점	정부 발행 수표·급여 수표·해당 금융기관 발행 수표 현금화 시 즉시 인출 가능
	청소년 계좌	16세 이상 단독 명의 계좌 제공

자료: CFE Fund, Bank On National Account Standards(2025-2026), 2024.11, 1. 재구성.

나. 취약계층 대출 지원

미국 재무부는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신용·자본·소비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 접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재무부 산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기금이 대표적으로, 미국 전역의 CDFI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과거부터 소외되어 온 낙후 지역의 경제적 기회 확대를 돕고 있다.

CDFI 기금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저소득층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지역개발은행, 신용협동조합, 대출기금, 영세기업 대출기금 등 금융기관(CDFI 인증 기관)이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Financial Assistance, FA)과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TA) 보조금을 제공한다. 재정 지원은 대출 자본, 대손충당금,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고, CDFI는 이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연방정부 외 자금으로 자체 조달해야 한다.¹⁵⁾

15) CDFI Fund, About the CDFI Fund, (<https://cdfi.org/about-cdfis/cdfi-fund/>, 검색일: 2026.4.3.)

CDFI 기금을 통해 받는 대출 상품의 금리는 상품 유형과 대출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CDFI의 임무는 전통적인 대출 기관에서 소외된 지역 사회에 저렴하고 공정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고금리 대출 상품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CDFI의 주요 대출 분야는 소상공인 및 기업, 주택 및 부동산 개발, 지역 사회 시설 등이며, 대출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CDFI 기금 주요 대출 분야 및 내용

대출 분야	주요 내용
소상공인 및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FI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에 자본을 제공함 • 신용 점수가 낮거나 사업 기간이 짧아 주류 은행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연한 심사 기준을 적용함 • 소규모 기업 대출, 소상공인 대출 및 운영 자본, 기술 지원 및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함
주택 및 부동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CDFI의 목표 중 하나로, 주택 및 부동산 개발 대출을 실시하고 있음 • 주택 개발, 취득, 재개발·건설, 주택 개량 등을 위한 대출을 제공함
지역 사회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출로, 보건, 보육, 교육, 문화,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의 취득, 건설, 개보수, 유지·개선을 위한 대출을 제공함

자료: CDFI Fund, (<https://www.cdfifund.gov/>, 검색일: 2026.4.3.), CDFI Fund, CDFI Program & NACA Program Financial Assistance Application Instructions. 2024. 재구성.

한편, CDFI 기금은 2021년부터 CDFI가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 대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액 대출 프로그램(Small Dollar Loan Program, 이하 SDL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금리 소액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뒷받침하고 있다.¹⁶⁾

SDL 프로그램은 CDFI가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Loan Loss Reserves, LLR) 보조금과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TA) 보조금을 제공한다. 대손충당금 보조금은 새로운 소액 대출 프로그램 시작 또는 기존

16)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2024.10, 4.

프로그램 확장과 관련된 소액 대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이며, 기술 지원 보조금은 소액 대출 프로그램 마련 및 유지를 위한 기술 도입 비용, 인건비 등이다.¹⁷⁾

CDFI의 소액 대출 프로그램의 한도는 2,500달러 이하이며, 고객은 분할 방식으로 CDFI에 상환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 CDFI는 고객의 상환 이력을 전국 단위 신용평가사에 보고해야 한다.¹⁸⁾

다. 사적 채무조정 제도

미국의 채무자구제 단계는 사적 채무조정(Out-of-Court Settlement), 공적 채무조정(Court-imposed Settlement) 그리고 신용 회복의 단계로 진행된다. 사적 채무조정은 민간 영리단체를 통해 별도 사유를 인정받아 약정 당시와 다른 조건을 통해 채무의 규모 및 일정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공적 채무조정은 사적 채무조정 실패 시 진행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의미한다.

미국은 「1898년 파산법(Bankruptcy Act)」 제정으로 개인 파산을 용인하고 원칙적으로 면책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채무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으로 2005년에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보호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BAPCPA)」이 제정되었다.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보호법(BAPCPA)」은 파산신청 이전에 사적 구제 제도인 신용상담과 신용 및 채무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민간 채무조정 단체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채무조정안을 수립하고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 관리 프로그램(Debt Management Plan)이 운영되어 왔다.

미국의 가장 큰 사적 채무조정 단체로 1951년에 설립된 미국신용상담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이하 NFCC)이 있다. NFCC에 속한 채무조정 기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채 상환 조건을 협상한다. NFCC와 NFCC 회원 기관은 매년 백만 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직접 재무 검토 및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파산 상담, 주택 상담(신규 주택 구매, 역순 모기지 상담, 압류 방지 등), 부채 관리 계획, 신용보고서 검토,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¹⁹⁾

17) CDFI Fund, SDL Program Fact Sheet, 2022.10.13, 1.

18) CDFI Fund, Small Dollar Loan Program, (<https://www.cdfifund.gov/programs-training/programs/sdlp>, 검색일: 2026.4.3.)

19)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https://www.nfcc.org/>, 검색일: 2026.4.3.)

NFCC는 비영리단체지만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해 최대 75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한다.²⁰⁾

라. 금융 교육

미국의 금융 교육은 금융문해력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를 중심으로 재무부, 교육부, 소비자금융보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24개 연방 정부 기관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FLEC는 2003년 「금융이해력 및 교육 증진법(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 제정에 따라 미국인의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금융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²¹⁾

FLEC는 금융 교육 웹사이트인 'MyMoney.gov'를 운영하며 금융 교육 자료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금융을 돈 벌기(Earn), 돈 늘리기(Save & Invest), 돈 지키기(Protect), 돈 쓰기(Spend), 돈 빌리기(Borrow) 등 5가지로 나누어 교육 자료 및 웹사이트 링크로 제공한다. 또한 개인의 생애 주요 사건을 제시하고, 각 사건에 필요한 금융·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 주요 사건은 자녀 출생, 고등교육, 결혼과 이혼, 주택 구매, 예상치 못한 사건(예를 들면, 코로나19), 취업·자영업, 퇴직,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다.²²⁾

미국은 학교 교육 과정에 금융 교육 도입을 각 주(state)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금융 교육 도입 수준이 주 별로 상이하다. 일부 주는 교육 과정에 금융 교육 관련 의무가 없는 반면, 일부 주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 금융이해력 교과목 이수를 요구하는 등 의무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전미 주 교육위원회는 미국 내 모든 주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에 금융 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4년 기준 총 25개 주에서 금융이해력 교과목의 수업을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 채택하고 있다.

성인 대상 금융 교육은 대부분 대학 수업, 직장 내 교육,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세미나,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

20) Investopedia, How Much Does Credit Counseling Cost?, (<https://www.investopedia.com/how-much-does-credit-counseling-cost-8576500>, 검색일: 2026.4.3.)

21) U.S.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U.S.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20, 4.

22) 정세창,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한 금융보험교육 정책 시사점, 보험학회지, 137, 2023, 9-10.

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성인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중 대표적인 곳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 고용주, 교사, 부모 등 다양한 대상에 맞춘 금융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주택구매, 비상 자금 마련, 학자금, 세금, 다양한 금융 상품 구매 등 실생활 중심의 주제를 다룬다.²³⁾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Money Smart program이 있다. FDIC는 금융 이용 능력 향상과 은행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교육 대상을 청소년, 성인, 노년층,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2001년부터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소득, 소비, 저축 등 기초 금융 개념을, 성인에게는 은행 업무, 자산 관리, 주택금융 등을, 노년층에게는 금융 사기 예방과 예기치 않은 지출 대비를, 자영업자에게는 현금 흐름 관리, 재무 및 세무 관리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한다.²⁴⁾

23) 한지형, 김경태, 해외 주요국 재무·금융교육 현황 및 시사점: 미국,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2024.8, 71-72, 78-79, 84-85.

24) 김경중, 美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포용적 금융 사례조사, 예금보험공사, 2018, 76.

II. 영국

-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 3 주요 정책 사례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영국 정부가 정의하는 포용적 금융이란 개인이 자신의 배경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²⁵⁾

포용적 금융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의제였다. 1999년, 노동당 정부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ing Financial Services)」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본 계좌(basic bank account)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4년, 1억 2,000만 파운드 규모의 포용적 금융 기금(Financial Inclusion Fund)을 조성하였으며, 2005년, 포용적 금융 태스크포스(Financial Inclusion Taskforce)를 발족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포용적 금융을 정책 의제로 이어갔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은행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저축 장려에 집중되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포용적 금융을 다시 정책 의제로 삼았다.²⁶⁾ 2017년, 연금 및 포용적 금융 담당 장관(Minister for Pensions and Financial Inclusion)직²⁷⁾을 신설하고, 2018년부터 연 2회 포용적 금융 정책 포럼(Financial Inclusion Policy Forum)을 개최하였다.

2024년 재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성장 공약(Growth Manifesto)’의 일환으로 영국 최초의 범국가적 포용적 금융 전략 수립을 약속하였고, 2025년에 「포용적 금융 전략(Financial Inclusion Strategy)」을 발표하였다.²⁸⁾

25)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nancial Lives 2024, 2025.5.16, 67.

26) Prabhakar, Rajiv, House of Commons Library, Financial inclusion, 2022.5.20, 4, 10-17.

27) 연금 및 포용적 금융 담당 장관직은 2017~2022년까지 존재한다.(자료: Professional Pensions, The full list of pensions ministers since 1998, <https://www.professionalpensions.com/news/2201473/list-of-pensions-ministers>, 검색일: 2026.4.3.)

28) The Payments Association, Toward financial inclusion: Shaping a national strategy for the UK, (<https://thepaymentsassociation.org/article/toward-financial-inclusion-shaping-a-national-strategy-for-the-uk/>, 검색일: 2026.4.3.)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가. 추진 체계

영국 재무부(HMT)는 포용적 금융 전략 정책의 수립 및 총괄 주체이며, 정책 자문 및 실행은 재무부 내 금융포용위원회(FIC)가 맡는다. 금융시장 감독은 금융행위감독청(FCA)에서 수행하며, 포용적 금융 전략은 자금연금청(MaPS)과 페어4올 파이낸스(Fair4All Finance)가 실행한다.²⁹⁾

[표 11-1] 영국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구분	기관
정책 수립 및 총괄	재무부(HM Treasury, HMT)
정책 자문 및 실행 관리	재무부 내 금융포용위원회(Financial Inclusion Committee, FIC)
금융시장 감독기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실행 기구	자금연금청(Money and Pensions Service, MaPS)
	페어4올 파이낸스(Fair4All Finance)

자료: 영국 정부(UK Government),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nancial-inclusion-strategy/financial-inclusion-strategy>, 검색일: 2026.4.3.). 재구성.

나. 추진 전략

영국 재무부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 장벽 제거와 금융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포용적 금융 전략(Financial Inclusion Strategy)」을 2025년 11월 5일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디지털 포용과 은행 서비스 접근성, △저축 지원, △보험을 통한 금융 회복력,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 접근성, △문제 채무 해결, △금융 교육 및 역량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전략 전반에 정신 건강, 접근성, 경제적 착취라는 세 가지 주제를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직면한 특수한 어려움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³⁰⁾

29) 영국 정부(UK Government),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nancial-inclusion-strategy/financial-inclusion-strategy>, 검색일: 2026.4.3.)

30) 영국 정부(UK Government),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nancial-inclusion-strategy/financial-inclusion-strategy>, 검색일: 2026.4.3.)

[표 11-2] 영국 「포용적 금융 전략」 분야별 주요 정책

분야	주요 정책
디지털 포용과 은행 서비스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에 오프라인 बैं킹 허브(banking hub)를 350개까지 확대 표준 신분증(Standard ID)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대형 은행과 제3섹터(시민사회단체 등) 간의 시범 파트너십 구축
저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공제 저축 제도 가입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와 전국 고용주 연합 출범 헬프 투 세이브 가입률 제고를 위한 참여 자격 완화
보험을 통한 금융 회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어4올 파이낸스 주도로 가재도구 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시범 사업 착수 정신 건강 취약 고객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및 보험 기준을 도입하고 관계 기관 협력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정신질환 보유자의 보험 접근성과 공정성 개선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협동조합,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등 정책기관을 통해 서민이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문제 채무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많은 국민이 채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자금연금청이 배분
금융 교육 및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연금청은 Money Helper, Money Guiders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 교육 실시 휴면 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페어4올 파이낸스를 통해 금융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자료: 영국 정부(UK Government),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nancial-inclusion-strategy/financial-inclusion-strategy>, 검색일: 2026.4.3.). 재구성

3. 주요 정책 사례³¹⁾

가. 디지털 포용과 은행 서비스 접근성

1) बैं킹 허브 확대 구축 사업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실시한 2024년 금융생활조사(Financial Lives Survey, FLS)³²⁾에서 영국 성인의 1.6%(약 90만 명)가 은행 계좌 미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 기준, 계좌 보유자 5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에 정기적으

31) 영국 정부(UK Government),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nancial-inclusion-strategy/financial-inclusion-strategy>, 검색일: 2026.4.3.)

32)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금융생활조사(FLS)는 2017년 시작되어 2020년, 2022년, 2024년 진행되었다. 「포용적 금융 전략」이 인용한 통계인 2024년 조사는 2024년 2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영국 전역의 18세 이상 성인 17,9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조사 결과는 2024년 또는 응답이 집중된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자료: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nancial Lives 2024 survey, <https://www.fca.org.uk/financial-lives/financial-lives-2024>, 검색일: 2026.4.3.)

로 이용하던 지점이 폐쇄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2020년 2월 기준³³⁾보다 5%p 증가한 수준으로, 대다수는 디지털 뱅킹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고령층 고객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훨씬 더디게 나타났다. 또한, 대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농촌 지역 거주자에게는 이러한 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였다.

영국은 은행 점포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및 현금 접근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뱅킹 허브(banking hub) 제도를 도입하였다. 뱅킹 허브는 여러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금융서비스 창구로, 기존 은행 점포가 철수한 지역에 설치되며 우체국과 협력하여 운영된다.³⁴⁾ 2025년 기준 240개 이상의 뱅킹 허브 설립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180개 이상이 운영 중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의회 종료 시점까지 뱅킹 허브를 350개까지 확대 구축하여 대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2) 취약계층 계좌 개설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범 사업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1,100만 명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취약계층의 계좌 개설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표준 신분증(Standard ID)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대형 은행과 제3섹터(시민사회단체 등) 간의 시범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시범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25년 영국 금융협회(UK Finance)는 신원 확인 실무 그룹을 소집하여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표준 신분증 없이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설계하였다. 영국 금융협회(UK Finance)는 은행, 규제 기관 및 제3섹터를 한데 모아 신원 및 주소 증명을 위한 새롭고 안전한 방법을 시험하고, 은행 간 일관성을 개선하며, 6개월마다 영국 재무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³⁵⁾

33) 2020년 금융생활조사(FLS)는 응답이 집중된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한다.(자료: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nancial Lives 2024 survey: Cash savings: Selected findings, 2025.5, 4.)

34) 심운보, 英, 올해 은행 공동점포 100개까지 확대 계획, 하나은행 금융연구소, 2024.5.27, 1-2.

35) Vouchsafe, What's in the UK's new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https://vouchsafe.id/>, 검색일: 2026.4.3.)

나. 저축 지원

1) 급여 공제 저축 제도 정비

2024년 기준 영국 성인의 10%는 저축을 하지 않으며, 20%는 1,000파운드 미만의 소액 저축만 보유하고 있다. 이는 낮은 금융 회복력 수준과도 연결되는데, 성인의 9%는 가계의 주 소득원이 끊길 경우 단 일주일 치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재무부는 「포용적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급여 공제 저축 제도를 지지하며,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재정적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주가 급여 공제 저축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였다. 그동안 급여를 공제하여 저축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가 임금 공제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규정 2015(The National Minimum Wage Regulations 2015)」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또한 직원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행위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제21조의 투자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금융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고용주의 검토 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³⁶⁾

또한 정부는 급여 공제 저축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 간 전국 단위 협력 기구인 전국 고용주 연합(National Coalition of Employers)을 출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2) 헬프 투 세이브 참여 자격 완화

헬프 투 세이브(Help to Save)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축 지원 제도다. 일정 요건³⁷⁾을 충족하는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수급자는 4년 동안 매달 1파운드에서 50파운드까지 저축할 수 있고, 1파운드당 50펜스(50%)의 정부 지원금(월 최대 50파운드)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비상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전체적인 참여율은 낮았다. 2025년 4월, 이 제도의 참여 자격을 1파운드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수급자로 완화하여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6) Financial Conduct Authority, Statement on workplace savings schemes, (<https://www.fca.org.uk/>, 검색일: 2026.4.3.)

37) 일정 요건이란 국가 생활 임금(National Living Wage) 기준 주 16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유니버설 크레딧 수급자를 말한다.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은 실업급여, 주거지원, 자녀수당 등 기존의 다양한 복지 급여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다.

다. 보험을 통한 금융 회복력

1) 가재도구 보험 가입률 제고

취약계층일수록 보험 가입률이 낮아 경제적 충격에 무방비하다. 2024년 기준 임차인의 2/3(67%)가 가재도구 보험(contents insurance)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주택 소유자는 해당 보험 미보유 비율이 10명 중 1명(11%)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페어4올 파이낸스는 사회주택 임차인의 가재도구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하였다. 2026년 1분기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2027년 말까지 보험 및 사회주택 분야 전반에 공유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정신 건강 취약 고객 지원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상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접근에는 여전히 일관되지 않은 지원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같은 장벽이 존재한다. 자금 및 정신 건강 정책 연구소(Money and Mental Health Policy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특히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는 정신 건강 및 보험 기준(Mental Health and Insurance Standards)을 도입하였다. 이 기준은 보험사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고객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공된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며, 고객의 신뢰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영국보험협회(ABI) 주도로 금융행위감독청(FCA), 자금 및 정신 건강 정책 연구소와 협력하여 기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자 보험 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라.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 접근성

영국은 신용 상품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성인의 79%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제도권 신용 상품이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 가능한 수준의 적정 대출

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으며, 특히 단기 소액 대출 시장에서 공급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 영국 성인의 28%가 최근 2년 사이에 하나 이상의 신용 상품을 신청했으며, 신청자 중 22%는 승인이 거절되었는데, 특히 고금리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arranged overdraft) 신청자에게 거절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약 30만 명의 성인이 비공인 대출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대출의 불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 수는 발표된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등 정책기관을 통해 서민이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신용협동조합 대출 서비스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은 영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공동 유대를 갖는 소비자들의 발의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금융기관이다. 지역, 단체, 직업 및 직장으로 분류되며 이 중 직업별 신용협동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지분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중장기 대출을 제공한다.³⁸⁾

정부는 잉글랜드 내 신용협동조합의 현대화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 파운드 규모의 신규 기금을 조성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영국 전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 규제 완화를 병행하고 있다.

2) 지역개발금융기관 대출 서비스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CDFI)은 일반 금융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2025년 기준 전국에 약 60개 미만의 CDFI가 운영되고 있다.

CDFI는 지역 사회 내에서 공공 또는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 개발 전략 차원에서 소규모 용자 사업을 시행한다. CDFI는 영세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소액 용자를 제공하며, 특히 금융소외계층과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다.

38) 이경진 외, 주요국 서민금융체계 비교 및 시사점, 하나은행 금융연구소, 2010.8, 31.

2023년 기준 CDFI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4,546곳에 총 1억 2백만 파운드의 대출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104개 신규 기업이 생겨나고, 4,138개 기업이 유지되었으며, 총 12,135개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³⁹⁾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페어4올 파이낸스가 주도하는 소액 대출(1,000파운드 미만 확정기한부(fixed term) 대출) 시범 사업을 지원하여, 잉글랜드 내 부담 가능한 신용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마. 문제 채무 해결

영국의 개인 채무조정은 비영리단체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주요 중재기관으로는 시민상담센터(Citizen Advice Bureau, CAB)와 스텝체인지 채무조정 자선단체(Step Change Debt Charity)가 있다. 사적 채무가 있는 성인 영국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5년의 변제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2024년 5월 기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성인 중 최근 1년 사이에 채무 상담이나 채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즉, 대다수인 78%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채무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권 분담금(levy)을 활용한 자금연금청 지원 예산을 2025~26회계연도부터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된 1억 파운드 이상으로 편성하였으며, 자금연금청은 이 자금을 각 지역의 상담 기구들에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바. 금융 교육 및 역량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전담 기관이 관련 법과 정책에 근거해 금융 경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을 통해 금융 교육을 법제화하였으며, 현재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후원을 받는 자금연금청이 국가 차원의 금융 경제 교육 정책의 설계와 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금연금청에서 실시하는 금융 교육 서비스는 Money Helper와 Money Guiders 등이 있다.

39) Responsible Finance, Lending Maps, (<https://responsiblefinance.org.uk/>, 검색일: 2026.4.3.)

Money Helper 서비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자산과 연금 관리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익, 일상의 돈, 가족 및 돌봄, 주택, 돈 문제, 연금 및 퇴직, 저축, 근로 등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주제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대출 관리나 예산 수립, 주택담보대출 계산을 지원하며, 연금이나 자금에 관한 질문을 하면 관련 전문가가 웹챗·휴대전화·웹사이트·SNS 등을 통해 답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⁴⁰⁾

Money Guiders 프로그램은 금융상담 현장 실무자(비영리, 공공서비스 및 공익 부문)가 규제 대상인 금융 자문과 비규제 영역인 금융 가이드의 경계를 인지하여, 비규제 영역 내에서 고객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금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 역량 체계와 무료 교육 등을 지원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의료기관, 고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금융 교육 및 가이드 제공 경로를 확대하고 있다.⁴¹⁾

한편, 금융행위감독청(FCA) 금융생활조사(Financial Lives Survey)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영국 성인 650만 명(12%)은 금융 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낮으며, 이 중 50%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⁴²⁾

정부는 「포용적 금융 전략」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휴면 예금을 활용하고, 약 1,500만 파운드 규모의 금융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의 실행은 페어4올 파이낸스가 담당한다.

40) 송인호 외, 영국·일본·싱가포르의 경제·금융 교육 현황, 한국개발연구원, 2025.5, 5-6, 10.

41) 영국 자금연금청(MaPS), Money Guiders FAQs, (<https://maps.org.uk/en/our-work/money-guiders/about/faqs>, 검색일: 2026.4.3.)

42)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nancial Lives 2024, 2025.5.16, 82.

III. 프랑스

-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2 정책 추진 체계
- 3 주요 정책 사례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프랑스에서 포용적 금융(L'inclusion bancaire)은 개인이 경제 및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편입 과정으로, 제도권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이 생계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실제 소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포용적 금융은 과다채무를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개인의 과다 채무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금융 소외 상태에 빠질 수 있다.⁴³⁾

2011년 프랑스의 독립 민간 기구 불평등 관측소(Observatoire des inégalités)가 실시한 가톨릭구호위원회 인터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금융 소외는 사회적 불의인 동시에 경제적 모순으로 규정된다. 금융 소외로 계좌가 없는 경우 급여 수령이 불가능하고 공과금 납부를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줄을 서야 하는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고 낙인이 찍히게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대출은 경제 발전의 강력한 지렛대인데, 정작 대출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금융 소외는 곧 사회적 소외로 인식되었다.

이에 1980년대부터 계좌를 가질 권리, 즉 계좌 개설권(droit au compte)을 법 제화하였고, 1998년부터는 무상 계좌 개설권(droit au compte gratuit), 최고 금리 제한(taux d'usure), 압류 금지 예금 잔액(solde bancaire insaisissable) 등 저소득층을 위한 법적 보호 수단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접근성 측면에서 저소득 고객은 짧은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수주에서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위험한 리볼빙 대출⁴⁴⁾은 가입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일반 대출이

43)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énergétique et numérique), Inclusion bancaire, (<https://www.tresor.economie.gouv.fr/banque-assurance-finance/inclusion-bancaire>, 검색일: 2026.4.3.), 프랑스 정부 공인 노사(勞使) 공동 주거 지원 기구 'Action Logement', Qu'est-ce que l'inclusion bancaire?, (<http://www.actionlogement.fr/qu-est-ce-que-l-inclusion-bancaire>, 검색일: 2026.4.3.)

44) 리볼빙 대출(credit renouvelable)은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지 않고, 원하는 날짜에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출로,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자료: 프랑스 정부(Le gouvernement français), Tout savoir sur le crédit à la consommation,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gerer-mon-argent/emprunter-et-sassurer/tout-savoir-sur-le-credit-la-consommation>, 검색일: 2026.4.3.)

나 적절한 결제 수단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할부 금융 대신 위험한 리볼빙 대출에 더 쉽게 노출되는 사용상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었다.

2013년 프랑스는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활동의 분리 및 규제에 관한 2013년 7월 26일 법률 제2013-672호(Loi n° 2013-672 du 26 juillet 2013 de séparation et de régulation des activités bancaires)」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포용적 금융관측소(L'Observatoire de l'inclusion bancaire, OIB)라는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포용적 금융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2. 정책 추진 체계

프랑스는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 내 재무총국(DG Trésor)에서 포용적 금융 정책을 수립·총괄한다. 프랑스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포용적 금융관측소(OIB) 산하 과학위원회, OIB 회원 은행, 지역 포용적 금융협의회(CDIF), 예산상담소(PCB), 사회적 협회 및 기구 등이 협력하여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 모니터링은 포용적 금융관측소(OIB)가 담당한다.

[표 III-1] 프랑스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기관	내용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énergétique et numérique)(이하, 재정경제부) - 포용금융 관련 법안을 기획하고 재정 투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부처 내 재무총국(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DG Trésor)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과다채무 문제 해결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금융 포용을 촉진함
프랑스 중앙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 포용적 금융 정책의 주요 실행 기관으로, 가계 부채 초과 처리, 계좌 개설권 관련 절차 운영, 은행 지급 사고 기록 파일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함 - 경제·예산·금융 교육(Stratégie nationale d'éducation économique, budgétaire et financière, EDUCFI)의 운영 주체로서 일반인과 사회 복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함

기관	내용
포용적 금융관측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금융관측소(L'Observatoire de l'inclusion bancaire, OIB) - 2013년 제정된 「은행 활동의 분리 및 규제에 관한 2013년 7월 26일 법률 제2013-672호」에 따라 설립됨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으며, 공공 부문, 은행권, 사회적 기구 출신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며, 관련 지표를 정의·분석하여 연례 보고서를 발간함
포용적 금융관측소 산하 과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금융관측소(OIB) 산하 과학위원회(Conseil scientifique) - 포용적 금융관측소 내에 설치된 자문 기구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의 대리인이 의장을 맡음 - 관측소가 수집하는 정보의 성격, 포용적 금융 관련 추적 지표 정의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금융관측소(OIB) 회원 은행 - 금융 취약 고객을 식별하고 이들에게 특화된 취약 고객 전용 상품 (Offre clientèle fragile, OCF)을 제공하며 은행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함 - 주요 참여 은행으로는 BNP 파리바(BNP Paribas), 크레디 아그리콜 (Crédit Agricole), 라 방크 포스탈(La Banque Postale),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BPCE 그룹(Groupe BPCE), 크레디 뮈튀엘 (Crédit Mutuel) 등이 있음
지역 포용적 금융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포용적 금융협의회(Conseils départementaux de l'inclusion financière, CDIF) - 프랑스 본토의 모든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중간자치단체)에 설치된 현장 중심의 협의체로, 지역별 포용적 금융 현안과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파악함. 원칙적으로 연 2회 소집됨 - 각 데파르트망의 프랑스 중앙은행 지점장(Directeur départemental de la Banque de France)이 의장을 맡으며 사회, 은행, 공공 부문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역 내 금융 취약성 문제를 논의함
예산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상담소(Points conseil budget, PCB) - 국가 인증을 받은 거점 구조로, 협회(associations), 지자체 사회복지센터 (Centres communaux ou intercommunaux d'action sociale, CCAS), 데파르트망 의회(Conseils départementaux) 등이 운영하며, 무료·익명·비공개·개별 맞춤 상담을 제공함 - 가계 부채 위기(과다채무, surendettement)를 예방하고 금융 교육을 실시함 - 과다채무자가 프랑스 중앙은행에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절차를 안내함
사회적 협회 및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협회 및 기구(Associations et organismes sociaux) - 포용적 금융관측소(OIB)의 회원 단체로,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고 권익을 대변함 - 주요 참여 단체로는 전국가족협회연합(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기관	내용
	familiales, Unaf), 프랑스 시립 사회복지센터 전국 연합(l'Union nationale des centres communaux d'action sociale, Unccas), 프랑스 구제회 (Secours Catholique), 엠마오 프랑스(Emmaüs France), 소비·주거·생활 환경협회(Consommation, logement et cadre de vie, CLCV), 소비자 연맹(UFC-Que Choisir) 등이 있음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Observatoire de l'inclusion bancaire Rapport Annuel 2024, 2025.6.27,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énergétique et numérique), Banque Assurance Finance, (<https://www.tresor.economie.gouv.fr/> 검색일: 2026.4.3.). 재구성.

3. 주요 정책 사례

가. 계좌 개설권

계좌 개설권(droit au compte)은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개인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이자 계좌 개설을 거부당한 모든 프랑스 거주자 및 해외 거주 프랑스인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다. 이 권리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는 기본 은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지급 계좌 수수료의 비교 가능성, 지급 계좌 전환 및 기본적 서비스를 갖춘 지급 계좌의 접근권에 관한 2014년 7월 2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Directive 2014/92/U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juillet 2014 sur la comparabilité des frais liés aux comptes de paiement, le changement de compte de paiement et l'accès à un compte de paiement assorti de prestations de base)」 제16조 기본 서비스가 포함된 지급 계좌 접근권에 관한 조항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계좌 개설을 거부당한 자는 계좌 개설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까운 프랑스 중앙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통화금융법전(Code monétaire et financier)」에 규정된 기관을 통해 무료로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류가 접수된 후, 프랑스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1영업일 이내에 계좌 개설을 위한 금융기관을 강제 지정한다. 지정된 은행은 3영업일 이내에 무료 기초 서비스를 포함한 계좌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 계좌 개설권 권리 이행을 위한 은행 지정 건수는 2025년 기준 23,289건으로 2024년 동기 대비 20.5%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지급 계좌 접근권에 관한 2014년 7월 23일 지침」 제17조~제 20조의 기본 서비스가 포함된 지급 계좌에 관한 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계좌 개설권뿐 만 아니라 유지 및 해지 권리, 계좌 명세서 발급, 은행 이체 수취 등록, 월별 계좌 거래 내역서 제공, 단일유로결제지역(SEPA) 자동이체, 원격 계좌 잔액 조회 수단 제공(인터넷/ 모바일 banking 등)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⁴⁵⁾

나. 경제적 취약 상태 고객 전용 서비스

계좌 이용 실태가 비정상적이거나 결제 사고가 3개월 연속 발생한 경우, 수표 부도 등으로 프랑스 중앙은행에 등록된 경우, 과다채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경제적 취약 상태로 간주한다.

금융기관은 경제적 취약 상태에 놓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월 3유로 이하의 요금으로 특정 서비스(Offre spécifique)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특정 서비스는 지급 사고(수표 부도, 잔액 부족 등) 시 발생하는 수수료(frais d'incidents bancaires)⁴⁶⁾에 대해 월간 및 연간 상한액을 설정하여, 취약계층이 과도한 금융 비용으로 인해 더 깊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일반 취약계층(월 25유로 상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지급 사고 수수료가 월 20유로 및 연간 200유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각 은행은 자체 브랜드(Facil'Accès, Generis 등) 상품을 통해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통화금융법전(Code monétaire et financier)」 제L.312-1-3조 및 제L.312-1-1-A조 금융 취약 고객 전용 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한다.⁴⁷⁾

45)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énergétique et numérique), Inclusion bancaire, (<https://www.tresor.economie.gouv.fr/banque-assurance-finance/inclusion-bancaire>, 검색일: 2026.4.3.), 프랑스 중앙은행 (Banque de France), Cadre juridique : principaux textes et articles de référence, 2025.6,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Baromètre mensuel de l'Inclusion Financière-n°57 décembre 2025, (<https://www.banque-france.fr/fr/publications-et-statistiques/statistiques/barometre-mensuel-de-linclusion-financiere-ndeg57-decembre-2025>, 검색일: 2026.4.3.)

46) 프랑스의 은행은 다른 유럽 국가 은행보다 지급 사고 수수료가 높은 편으로, 평균 18유로에 달한다. 이는 독일의 지급 사고 수수료 3유로의 6배로, 같은 미지급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자료: 프랑스 존, 프랑스 은행들, 금융 사고 비용 과다 청구, (<https://www.francez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9294>, 검색일: 2026.4.3.)

47)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énergétique et numérique), Inclusion bancaire, (<https://www.tresor.economie.gouv.fr/banque-assurance-finance/inclusion-bancaire>, 검색일: 2026.4.3.), 프랑스 중앙은행 (Banque de France), Cadre juridique: principaux textes et articles de référence, 2025.6.

다. 소액 대출 제도

프랑스의 소액 대출 제도(Le microcrédit)는 일반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정책으로,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고용 복귀를 돕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소액 대출 제도는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2005년 1월 18일 법률(Loi n° 2005-32 du 18 janvier 2005 de programmation pour la cohésion sociale)」 제80조 사회적 통합 기금 신설 관련 조항 등을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서류와 상환 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각 대출에는 대출 상품 유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며, 대출 신청부터 상환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센터의 사회적 동행(Accompagnement social)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 기관은 금융권에서 배제된 대출 신청자의 대출 상담, 서류 준비, 신청 접수, 상환 모니터링, 예산 지도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와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사이를 연결하며, 단순한 대출 중개를 넘어 신청자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심층적인 동반 지원을 제공한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대출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고, 제도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소액 대출 제도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기관, 협회, 은행 등 다양한 주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참여하는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혜자 선정부터 자금 지원 및 사회적 동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서로 협력한다.⁴⁸⁾

또한,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보증 제도인 사회결속기금(Fonds de cohésion sociale, FCS)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인가된 협회에서 제공하는 소액 대출 상품을 보증하고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창설된 기금으로, 보증 비율(Quotités de garantie)은 수혜 대상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금은 상환 불이행 위험을 일부 흡수하여 대출 기관의 손실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도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⁴⁹⁾

48)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Le microcrédit, (<https://www.banque-france.fr/fr/a-votre-service/particuliers/connaître-pratiques-bancaires-assurance/credit/microcredit>, 검색일: 2026.4.3.),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Connaître les dispositifs d'inclusion financière à destination des particuliers, 2025, 8-9.

소액 대출은 목적에 따라 개인 소액 대출(Microcrédit personnel)과 사업자 소액 대출(Microcrédit professionnel)로 구분된다.

[표 III-2] 프랑스 소액 대출 상품 유형

상품	특징
개인 소액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사회적·직업적 통합(L'insertion sociale et professionnelle)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차량 구매 및 수리, 운전면허 취득, 교육, 가계 안정화, 주택 에너지 개량 등을 지원함 - 대출 한도는 최대 8,000유로(약 1,360만 원), 상환기간은 최대 7년이며 금리는 1.5~4% 사이임 -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가계부 관리 지원 등을 병행하여 원활한 상환을 도모함
사업자 소액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창업자 또는 기업 인수자의 3인 미만 사업장 창업 또는 인수를 장려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함 - 일반 은행 대출을 대체 또는 보완하며, 경우에 따라 자기자본(Fonds propres) 성격의 개인 출자금으로 간주되기도 함 - 대출 한도는 최대 1만 7,000유로(2,900만 원),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며 금리는 5~10% 사이임 - 사업 구상부터 평가, 자금 조달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협회 네트워크 등의 지원을 받음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Le microcrédit, (<https://www.banque-france.fr/fr/a-votre-service/particuliers/connaître-pratiques-bancaires-assurance/credit/microcredit>, 검색일: 2026.4.3.). 재구성.

라. 채무조정 제도

프랑스의 과다부채 조정 제도(Procédure de surendettement)는 부채 문제에 직면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로,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처리를 전담하며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된다.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L.711-1조~제L.711-12조 및 제 R.711-1조~제R.711-6조 과도한 채무 상황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에 관한 조항 등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49) Bpifrance, Le Fonds de Cohésion Sociale, géré par Bpifrance au nom et pour le compte de l'Etat joue un rôle fondamental dans l'inclusion économique et sociale et l'accès à l'entrepreneuriat pour les publics les plus fragiles, 2025.4.16.

과다부채 조정은 프랑스인, 외국인인 자연인(Personne physique), 프랑스 내 채권자에게 부채가 있는 해외 거주 프랑스 국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부채(비직업적 또는 직업적 부채)를 갚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상태로서 선의(Bonne foi)를 가지고 있다면 과다부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⁵⁰⁾

2025년 한 해 동안, 총 14만 8,013건의 과다부채 조정 신청(dépôts de dossiers de surendettement)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⁵¹⁾

마. 금융 교육

프랑스는 2016년부터 국가 금융 교육 전략인 「경제·예산·금융 교육 국가 전략(Stratégie nationale d'éducation économique, budgétaire et financière, EDUCFI)」(이하 에듀크피)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이 전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립하고 G20이 채택한 고수준 원칙(principes de haut niveau[high level])을 기반으로 한다. OECD에 따르면, 금융 교육은 올바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개인의 금융 복지(bien-être financier individuel)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에듀크피 전략의 이행은 프랑스 정부가 국가 사업자(opérateur national)로 지정한 프랑스 중앙은행이 총괄하며, 프랑스 중앙은행은 제도적 기구, 협회 및 전문가 집단의 활동을 조정한다.

에듀크피의 목표는 개인을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및 금융 사안을 더 잘 이해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실무적 지식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세부 교육 내용은 개인 및 가계의 예산 관리, 은행 및 보험 도구(계좌, 결제 수단, 대출, 저축, 보험)의 학습과 활용,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 등을 포괄한다. 자금 및 저축 관리, 부채 조절, 금융 사기 예방, 문제 발생 시 상담처 인지 등을 목표로 한다.

에듀크피 교육 활동은 중립성(neutralité), 신뢰성(fiabilité), 접근성(accessibilité),

50)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Comprendre la procédure de surendettement, (<https://www.banque-france.fr/fr/a-votre-service/intervenants-sociaux/comprendre-procedure-surendettement>, 검색일: 2026.4.3.)

51)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Baromètre mensuel de l'Inclusion Financière-n°57 décembre 2025, (<https://www.banque-france.fr/fr/publications-et-statistiques/statistiques/barometre-mensuel-de-linclusion-financiere-ndeg57-decembre-2025>, 검색일: 2026.4.3.)

무상성(*gratuit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OECD 권고에 따라 금융 교육 활동은 상업적·마케팅적 맥락과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특정 상품이나 주체를 홍보할 수 없다. 프랑스 에듀크피의 5대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⁵²⁾

[표 III-3] 프랑스 에듀크피 5대 전략과제

전략과제	내용
청소년 교육	• 청소년을 위한 예산 및 금융 교육 발전
취약계층 지원	•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계자의 역량 개발
생애 전 주기 지원	•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산 및 금융 역량 유지 지원
경제 토론 이해	• 모든 대중에게 경제 토론(<i>débats économiques</i>)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기반 제공
기업가 동행	• 기업가의 경제 및 금융 역량 강화 지원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La stratégie nationale d'éducation économique, budgétaire et financière*, (<https://www.banque-france.fr/fr/la-strategie-nationale-deducation-economique-budgetaire-et-financiere-educfi>, 검색일: 2026.4.3.). 재구성.

52)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La stratégie nationale d'éducation économique, budgétaire et financière*, (<https://www.banque-france.fr/fr/la-strategie-nationale-deducation-economique-budgetaire-et-financiere-educfi>, 검색일: 2026.4.3.)

IV. 호주

-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 3 주요 정책 사례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호주 정부가 정의하는 포용적 금융이란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⁵³⁾

2000년대 말까지 호주는 정부 차원에서 포용적 금융을 공공 정책의 핵심 기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민간 차원에서 지역 사회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소액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무이자 대출 제도(No Interest Loans Scheme, NILS), 호주 최초의 매칭 저축 프로그램인 세이버 플러스(Saver Plus), 스텝 업(Step Up), 소액 대출 프로그램인 프로그레스 론(Progress Loans)이 있다.

호주 정부는 2015년부터 '금융 웰빙 및 역량 활동(Financial Wellbeing and Capability, 이하 FWC 활동)'이라는 정책 체계로 민간의 포용적 금융 프로그램을 편입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FWC 활동은 1970년대 말 도입된 긴급 구호 프로그램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1990년 연방 금융 상담(Commonwealth Financial Counselling, CFC)이 도입되면서 단순한 위기 지원을 넘어 조기 개입과 금융 역량 강화로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다.⁵⁴⁾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호주 정부가 기존 소액 대출 프로그램에 총 3,300만 호주달러(이하 달러)를 투자하면서, 무이자 대출 제도(NILS)와 저축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버 플러스(Saver Plus)를 정부 지원 사업으로 편입하였다. 이러한 개별 프로그램들은 2015년 FWC 활동으로 편입된 이후, 금융 회복 전략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 체계로 발전하였다.⁵⁵⁾

53) 호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Review of Financial Wellbeing and Capability programs—Consultation Paper, 2023.12, 40.

54) 호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Review of Financial Wellbeing and Capability programs—Consultation Paper, 2023.12, 10, 호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Financial Wellbeing and Capability Guidelines Overview, 2016.12, 10.

55) Arashiro, Zuleika, Financial inclusion in Australia: Towards transformative policy, Brotherhood of St. Laurence and University of Melbourne Centre for Public Policy, 2010.8, 3, 호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Review of Financial Wellbeing and Capability programs—Consultation Paper, 2023.12, 10, 호주 사회복지부 이전 장관(Department of Social Service Former Ministers), Financial measures to support struggling Australians, (<https://formerministers.dss.gov.au/14405/financial-measures-to-support-struggling-australians/>, 검색일: 2026.4.3.)

FWC 활동의 목표는 4가지로, ① 재정적·사회적 소외 및 불이익을 겪을 위험이 가장 큰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수단 제공, ② 개인의 부채 관리 지원, ③ 금융 회복력과 자립심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 강화, ④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위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비 압박 완화 및 자연재해 대응 지원이다.

호주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약 1억 5,000만 달러를 FWC 활동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 예산인 1억 2,000만 달러에서 증액된 것으로, 매년 약 50만 명의 호주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⁵⁶⁾

2011년, 호주 금융감독기관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는 국민의 금융 문해력 향상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주 최초의 「국가 금융 문해력 전략(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을 발표하였다. ASIC는 이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금융 교육 플랫폼인 'Moneysmart'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2014년과 2018년에 개편된 전략을 발표하였고, 2018년부터 「국가 금융 역량 전략(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2년부터 주무 기관이 ASIC에서 호주 재무부(The Treasury)로 변경되었다.⁵⁷⁾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가. 추진 체계

호주의 포용적 금융은 재무부가 「국가 금융 역량 전략」을 담당하고, 호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가 재정 위기에 처한 개인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FWC 활동을 담당한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와 국세청은 금융 규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56) 호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Supporting people in financial crises, (<https://www.dss.gov.au/supporting-people-financial-crises>, 검색일: 2026.4.3.), 호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Financial Wellbeing and Capability Activity – grants outcome announced, (<https://www.dss.gov.au/news/financial-wellbeing-and-capability-activity-grants-outcome-announced>, 검색일: 2026.4.3.),

57) OECD,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OECD/INFE Policy Handbook, 2015, 20, Moneysmart, About us, (<https://moneysmart.gov.au/about-us>, 검색일: 2026.4.3.)

[표 IV-1] 호주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구분	기관
정책 총괄	재무부(The Treasury): 국가 금융 역량 전략(NFCS)
	사회복지부(DSS): 금융 웰빙 및 역량 활동(FWC 활동)
금융 규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호주 국세청(ATO)

자료: 호주 재무부(The Treasury),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2022.2, 8-9. 재구성.

나. 추진 전략

호주 재무부는 2022년 「국가 금융 역량 전략(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이하 NFC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호주 정부가 포용적 금융 주무 기관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에서 재무부로 이관한 뒤 나온 첫 전략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으로 수백만 호주인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과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기회와 위협, OECD 등 국제기구가 금융 역량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추세에 따른 대응이다.

NFCS의 목표는 국민이 생애 전반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첫째, 지원 대상의 생애 주기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디지털 도구,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적 접근을 활용한다. 셋째, 정책 효과가 측정 가능해야 하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NFCS는 청년, 여성, 은퇴 전후 노년층, 원주민(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금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격년마다 실시하는 금융 역량 전국 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역량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지원한다.⁵⁸⁾

58) 호주 재무부(The Treasury),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2022.2, 1, 6, 16-18.

[표 IV-2] 호주 「국가 금융 역량 전략」 대상별 정책

대상	정책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이들이 '재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단계에서 재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 교육 플랫폼인 'Money Managed'를 도입함. 첫 직장 구하기나 큰 금액의 구매를 위한 저축 등 청소년들이 처음 겪는 재정적 경험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 팁, 도구를 제공하는 모바일 중심의 대화형 플랫폼임 • 부모와 십대 자녀가 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함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의 재정적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됨. 주로 가족을 위한 무급 돌봄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이 누적됨 • 여성이 효과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엑스트라 재단 (Ecstra Foundation)에 1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함. 이 자금은 호주 전역의 사회적 기업과 자선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 및 금융 교육을 통해 여성의 재정적 복지와 경제적 안정을 증진하는 데 사용됨 • 여성이 재정적 학대 행위를 인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재정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이러한 형태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함
은퇴 전후 노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에서 고령층은 젊은 층보다 평균적으로 재정 관리 능력이 더 뛰어나지만, 2020년 호주 통계청의 은퇴 의향 조사에 따르면, 45세 이상 인구 중 거의 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은퇴 계획을 세우지 않음. 또한 노인 학대의 가장 흔한 형태가 재정적 학대임 • 정부는 노년층의 재정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10월 5일부터 은퇴 소득 상품 제공업체가 상품 설계 및 유통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은퇴 소득 상품이 적합한 은퇴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함 • 2022년 7월 1일부터 은퇴 소득 보장 협약(Retirement Income Covenant)을 시행하여, 수탁자는 가입자가 은퇴 소득 극대화, 위험 관리, 저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원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재정 회복력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제도 주민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 행동 참여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지난 12개월 동안 생활비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함 • 원주민의 금융 역량 강화는 이들이 가용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기회를 창출하고, 호주 평균보다 낮은 재정적 복지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The Treasury),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2022.2, 18-23.

3. 주요 정책 사례

가. 취약계층 대출 지원

무이자 대출 제도(No Interest Loans Scheme, 이하 NILS)는 호주 비영리단체인 굿 셰퍼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Good Shepherd Australia New Zealand, GSANZ)가 호주 사회복지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여러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시행하며, 저소득층에게 안전하고 공정하며 부담 가능한 대출 기회를 제공한다.

NILS는 '생활 필수 재화·서비스 구매 목적의 대출'과 '이동 수단 구매 목적의 대출' 두 종류로 나뉜다. 이자 및 수수료는 없으며 상환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부담 가능한 회당 상환액을 설정한다.

신청 자격은 현 주소지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한 내 대출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저소득)을 충족해야 한다.⁵⁹⁾

- ① 헬스케어 카드(Health Care Card) 또는 연금 수급자 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 소지자
- ② 연 소득(세전): 7만 달러 미만(1인 가구), 10만 달러 미만(부부·부양가족 동반 가구)
- ③ 가정 폭력 피해자 특례: 10년 이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소득 제한 미적용

[표 IV-3] 호주 무이자 대출 종류

목적	주요 내용
생활 필수 재화·서비스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1) 가전·가구 등 생활용품 구매, 차 수리, 일반 병원비, 치과 치료비, 기타 월빙 및 경조사 비용, 컴퓨터·노트북 구매, 휴대폰·태블릿 등 기타 전자기기 구매 (최대 1,000달러), 2) 수업료·교복 등 교육비, 자격 취득·장비 구매 등 취업 및 고용 유지 비용(최대 2,000달러), 3) 주택 임차 보증금, 자연재해 복구 제반 비용 (최대 3,000달러) ※ 각종 세금·공과금·임대료 납부, 기존 부채 상환, 긴급 구호 자금으로 이용 불가 • 지급 방식: 대출금은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직접 지불됨 • NILS 시행 기관(지역 사회 단체 250여 개가 호주 전역 650여 곳에 분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함.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조회 절차가 없음

59) National Debt Helpline, No Interest Loans, (<https://ndh.org.au/debt-solutions/no-interest-loan-scheme/>, 검색일: 2026.4.3.)

목적	주요 내용
이동 수단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승용차, 스쿠터, 보행 보조용 전동스쿠터, 오토바이 등 생활에 필요한 이동 수단 구매(2,000~5,000달러) ※ 취미용 자전거, 보트, 캠핑카 구매 불가 • 지급 방식: 대출금은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이동 수단 판매자에게 직접 지불됨 • NILS 시행 기관 중 일부 공인된 기관에서만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승인을 위해 신용 조화를 거쳐야 함

자료: National Debt Helpline, No Interest Loans, (<https://ndh.org.au/debt-solutions/no-interest-loan-scheme/>, 검색일: 2026.4.3.)

나. 저축 지원

2003년 시작된 세이버 플러스(Saver Plus)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매칭 저축 프로그램이다. 호주의 비영리단체인 브라더후드 세인트 로런스(Brotherhood of St. Laurence)와 호주뉴질랜드은행(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이하 ANZ)이 개발했으며, 호주 사회복지부(DSS)와 ANZ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세이버 플러스(Saver Plus)는 저소득층의 교육 관련 비용(직업 교육·훈련 비용, 컴퓨터·교복·교재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매칭 저축 프로그램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전 합의된 교육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18세 이상이며, △헬스케어 카드 또는 연금 수급자 카드 소지자, △연방 정부의 사회 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본인이 학업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는(또는 내년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는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다.⁶⁰⁾

60) Brotherhood of St. Laurence, Saver Plus, <https://www.bsl.org.au/services/saving-and-managing-money/saver-plus/>, 검색일: 2026.4.3.), Brotherhood of St. Laurence, Saver Plus terms and conditions, (<https://www.bsl.org.au/services/saving-and-managing-money/saver-plus/saver-plus-terms-and-conditions/>, 검색일: 2026.4.3.), Saver Plus, (<https://saver-plus.org.au/>, 검색일: 2026.4.3), 호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Loans and savings, (<https://www.dss.gov.au/loans-and-savings>, 검색일: 2026.4.3.)

[표 IV-4] 세이버 플러스 프로그램 진행 순서

- ① 전담 저축 코치와 함께 교육 관련 비용 총당을 위한 저축 목표를 설정한다.
- ② ANZ 은행의 전용 계좌(Progress Saver account)를 개설하고 10개월간 정기적으로 저축한다.
- ③ ANZ 은행이 개발한 토론과 활동 위주의 온라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MoneyMinded'를 이수한다.
- ④ 저축 목표 달성 시, ANZ 은행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최대 500달러)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자료: Brotherhood of St. Laurence, Saver Plus, <https://www.bsl.org.au/services/saving-and-managing-money/saver-plus/>, 검색일: 2026.4.3.)

다. 금융 교육

호주는 금융 교육을 위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Moneysmart'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Tax, Super+You'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Moneysmart는 호주 국민의 금융 문해력 향상과 개인 재정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제작·운영한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2011년 「국가 금융 문해력 전략」을 발표하고 Moneysmart를 출시하였다.

Moneysmart는 저축을 장려하고,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직, 출산, 이혼, 주택 구입, 배우자 상실 등 인생의 기복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예산 플래너를 사용하여 지출을 계획하고 부채를 줄이거나, 은퇴 플래너를 통해 더 나은 연금 수령액을 얻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연금 vs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사용하면 여유 자금을 연금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 계산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청소년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 자료와 전자책을 제공한다. 웹사이트의 내용은 재무 설계사, 보험계리사, 소비자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경험이 풍부한 팀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2023년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생활비가 상승하자, 자산 관리를 위해 Moneysmart 방문자 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 상품 변경(57% 증가), 저축 증대(34% 증가), 부채 관리(34% 증가)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 호주인들이 실질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Moneysmart를 적극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⁶¹⁾

국세청(ATO)의 'Tax, Super+You' 웹사이트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세금 및 연금 제도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호주 교육 과정에 맞춰 개발된 학습 관리 시스템(대화형 비디오, 퀴즈 및 평가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를 위해서는 'Paying It Forward' 웹사이트에서 세금 및 연금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⁶²⁾

61) ASIC, ASIC's Moneysmart helps Australians manage the rising cost of living, (<https://www.asic.gov.au/about-asic/news-centre/news-items/asic-s-moneysmart-helps-australians-manage-the-rising-cost-of-living/>, 검색일: 2026.4.3.)

62) Moneysmart, (<https://moneysmart.gov.au/>, 검색일: 2026.4.3.), ASIC, MoneySmart - FAQs, <https://www.asic.gov.au/about-asic/news-centre/find-a-media-release/2011-releases/mr-11-49-attachment-1-moneysmart-frequently-asked-questions/>, 검색일: 2026.4.3.), 호주 재무부(The Treasury),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2022.2, 19.

V. 일본

-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2 정책 추진 체계
- 3 주요 정책 사례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일본의 포용적 금융은 '금융포섭(金融包摂)'으로 표현하며, 이는 모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필수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⁶³⁾

일본 후생노동성은 1955년부터 복지정책으로서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일본정책금융공사(Japan Finance Corporation, 이하 JFC)가 서민, 중소기업, 농어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서민금융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로, 19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은행의 자금 공급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는 금융 소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⁶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걸친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한 소액 무담보 신용 대출(사라킹, サラ金)이 급증하면서 과다·다중채무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금융 문제가 악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다중채무 문제의 원인을 신용카드 회사나 소비자금융의 과잉 대출과 고금리로 보고, 2006년 12월 20일, 이를 규제하는 '신대금업법제'를 공포하였다.⁶⁵⁾

2000년 이후 금융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⁶⁶⁾ 2000년 6월 금융청 금융심의회의 보고서 「21세기를 유지하게 하는 금융의 새로운 틀에 대해(21世紀を支える金融の新しい枠組みについて)」에서 금융서비스 규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금융 교육을 진행하였다. 금융청, 일본은행 금융홍보중앙위원회, 문부과학성 등 정부 기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일관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2024년 4월,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를 설립하였다.⁶⁷⁾

일본 금융청은 매년 「금융행정방침(金融行政方針)」을 통해 금융 행정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청은 2020년 「금융행정방침」에서 단순한 금융 접근성 제

63) 노무라증권(野村証券), 金融包摂, (<https://www.nomura.co.jp/>, 검색일: 2026.4.3.)

64) 손희영, 박익서, 강만수, 서민금융의 햇살론 대환자금 및 바뀐드림론 비교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4),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학회, 2015, 697.

65) 이종인, 일본의 서민금융제도와 소비자문제 :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비교분석, 소비자문제연구, 38, 한국소비자원, 2010.10, 58-61.

66) 송인호 외, 영국, 일본, 싱가포르의 경제·금융 교육 현황, 한국개발연구원, 2025.5, 29-31, 45.

67) 한국교육개발원, 경제·금융교육 운영 현황, 2025, 58.

고를 넘어 빈곤·소외계층(장애·고령자 등)을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포용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⁶⁸⁾ 최근 발표된 2025년 「금융행정방침」은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응 촉구, 재해 발생 시 대응 체제 구축,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를 통한 금융 교육 활성화, 지역 금융력 강화 계획 등을 과제로 명시하였다.⁶⁹⁾

2. 정책 추진 체계

일본은 금융청(金融庁)이 포용적 금융 정책을 총괄하고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재무성(財務省) 등 정부 기관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포용적 금융 정책을 수행한다.

일본의 포용적 금융 정책별 주요 추진기관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일본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구분	기관	주요 내용
서민금융제도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사회복지협의회, 재무성(財務省), 일본정책금융공사(JFC)	생활복지자금제도, 정책금융공사 대출
채무자 보호	금융청(金融庁), 법원, 일본신용상담협회(JCCO),	신대금업법제를 통한 대금업 규제 강화, 사적 채무조정 제도
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청(金融庁), 전국은행협회,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우체국(郵便局)	고령자·외국인·장애인·인구 감소 지역 주민 대상 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 교육	금융청(金融庁),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소비자청(消費者庁),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	소비자 교육, 연령별 금융 문해력 교육 통합 추진

자료: 이수진, 해외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금융브리프 포커스, 34(20), 한국금융연구원, 2025.10, 11, 일본 금융청(金融庁), 2025事務年度 金融行政方針, 2025.8, 7, 11, 한국교육개발원, 경제·금융교육 운영 현황, 2025, 58-62, 손희영, 박의서, 강만수, 서민금융의 햇살론 대환자금 및 바뀐드림론 비교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4),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학회, 2015, 697, 이종인, 일본의 서민금융제도와 소비자문제 :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비교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38, 한국소비자원, 2010.10, 60-61. 재구성.

68) 일본 금융청(金融庁), 令和2事務年度金融行政方針(別冊)補足資料, 2020.8, 水口 毅, 我が国における金融包摂の課題と対応状況, 일본 KPMG, 2021.5.7, 1.

69) 일본 금융청(金融庁), 2025事務年度 金融行政方針, 2025.8, 7, 11.

3. 주요 정책 사례

가. 서민금융제도

1)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生活福祉資金貸付制度)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는 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社会福祉協議会) 주관으로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1955년 창설되어 제도 정비를 거쳐 2009년 10월부터 현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⁷⁰⁾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부담한다.

생활복지자금대출 지원자가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의 민생위원 상담을 거쳐 자금을 신청하면, 다른 제도나 정책 이용가능성 및 상환가능성을 검토한 후, 사회복지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 없는 경우에는 연 1.5%다. 다만, 긴급소액자금(緊急小口資金)·교육지원자금은 무이자 대출이며, 부동산담보형 생활자금의 경우 연 3% 또는 최우대 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는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부동산담보형 생활자금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¹⁾

[표 V-2]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

자금의 종류		내용
종합 지원 자금	생활지원비	• 생활 자립에 필요한 생활비 • (개인)월 15만 엔 이내, (2인 이상)월 20만 엔 이내 대출 가능
	주택입주비	•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을 위해 필요한 비용 • 40만 엔 이내 대출가능
	일시 생활 재건비	• 생활 자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하나, 일상 생활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비용 • 취직·이직을 전제로 한 기술 습득 비용, 체납 공공요금 대납, 채무정리 비용 등 • 60만 엔 이내 대출가능

70) 이수진, 해외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금융브리프 포커스, 34(20), 한국금융연구원, 2025.10, 11.

71)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生活福祉資金貸付制度について,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1397790.pdf>, 검색일: 2026.4.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生活福祉資金貸付条件等一覧, (<https://www.mhlw.go.jp/>, 검색일: 2026.4.3).

자금의 종류		내용
복지 자금	복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을 위한 필요 경비, 기술 습득 비용·기술 습득 기간 중 생계 유지비, 주택 증개축·보수 및 공영 주택 인수비, 복지 용품 구입,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 부상·질병 치료 및 치료 기간 생계 유지비, 간병 돌봄·장애인 서비스 이용비, 재해로 인한 임시 필요 경비, 관혼상제 비용 등 기타 일상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 자금을 폭넓게 제공 • 580만 엔 이내 대출가능
	긴급소액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의 소액 경비 • 10만 엔 이내 대출가능
교육지원 자금	교육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정 구성원의 고등학교,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 학제 과정) 등 교육비 • (고교)월 3.5만 엔 이내, (고등전문학교)월 6만 엔 이내, (단기대학)월 6만 엔 이내, (대학)월 6.5만 엔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필요시 각 상한의 1.5배까지 가능
	입학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정 구성원의 고등학교,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 학제 과정) 등 입학금 • 50만 엔 이내 대출가능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고령자 가구에 대해, 일정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 • 토지 평가액의 약 70% 정도(월 30만 엔 이내) 대출 가능
	병간호 세대용 부동산 담보형 생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간호가 필요한 고령자 가구에 대해, 거주용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 • 토지·건물 평가액의 약 70% 정도(공동주택은 50%), 생활부조액(生活扶助額)의 1.5배 이내 대출가능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生活福祉資金貸付条件等一覧, (<https://www.mhlw.go.jp/>, 검색일: 2026.4.3.)

2) 정책금융공사 대출

2008년 10월 1일, 「일본정책금융공고법(日本政策金融公庫法)」에 근거하여 기존의 서민, 중소기업인, 농어민 대상 정책금융기관이 통합하여 일본정책금융공사(이하, JFC)가 출범하였다. JFC는 재무성(財務省) 소관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재정융자, 자체 채권 발행, 정부 출자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조직은 사업 대상에 따라 ‘국민생활사업본부’, ‘농림수산사업본부’, ‘중소기업사업본부’로 구성된다. 부문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객 성장을 지원

하고, 대규모 재해나 금융 질서 혼란 등 국가적 위기 발생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위기 대응 등 원활화 업무도 실시한다.⁷²⁾

국민생활사업본부는 민간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재해나 경기 변동에 대응한 경영 안정 지원과 국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용자 항목과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⁷³⁾

[표 V-3] JFC 국민생활사업본부 용자 항목과 지원 대상

구분	용자 항목	지원 대상
일반 대출	일반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업종
세이프티넷 (안전망)	경영환경 변화 대응 자금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으로 일시적 실적 악화자
	거래 기업 도산 대응 자금	거래 기업의 도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위기 대응 사후 경영 안정 자금	대규모 재해, 감염병 등의 영향으로 채무 부담이 가중된 사업자
신기업 육성	신규 창업·스타트업 지원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약 7년 이내인 자 - 여성, 35세 미만, 55세 이상 창업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 재도전 지원 - 중소기업 경영 강화
	신사업 활동 촉진 자금	제2의 창업(다각화, 업종 전환), 신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자
기업 활력 강화	기업 활력 강화 자금	유통·서비스업 중 효율화 등을 위한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자
	해외 진출·사업 재편 자금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생산 위탁, 수출 확대 등을 도모하는 자
	소셜 비즈니스 지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보육·간병 서비스업 등 사회적 과제 해결 목적의 사업자
	사업승계·집약·활성화	기업 승계 준비, 주식·사업용 자산 취득 또는 승계 후 신규 사업 추진자
	관광산업 생산성 향상	관광 관련 사업자 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대책 자금	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 및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추진 사업자
기업 회생	기업 회생 자금	금융기관 지원이나 중소기업 활성화 협의회 등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자

72)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https://www.jfc.go.jp/>, 검색일: 2026.4.3.)

73)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日本政策金融公庫 国民生活事業のご案内 2025, 2025.7, 3-4.

구분	용자 항목	지원 대상
기타 용자	재해 대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대출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자
	2017년 7월 호우· 노토반도 지진 특별 대출	2017년 7월 호우와 2017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자
경영 개선	소규모 사업자 경영 개선 자금(마루케이 용자)	상공회의소 등의 경영 지도를 받는 소규모 사업자 (무 담보·무보증)
생활 위생	일반/진흥/개선 대출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등 18개 생활 위생 관련 업종 사업자
복지 및 가계	국가 교육 대출	자녀의 교육자금이 필요한 가정
	연금·공제연금 담보 대출	군인·공무원 연금 등을 수령하며 주택·사업 자금이 필요한 자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日本政策金融公庫 国民生活事業のご案内 2025, 2025.7, 29-31. 재구성.

농림수산사업본부는 농림수산업자와 식품업 종사자에게 금융·경영환경 변화 대응, 경영 개선, 컨설팅 및 기업 연결 서비스 등 관련 지원을 실시한다. 대출 회수 기간이 장기이며 수익 흐름이 불안정한 농림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업종별 생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사업본부의 용자 항목과 지원 대상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⁴⁾

[표 V-4] JFC 농림수산사업본부 용자 항목과 지원 대상

구분	용자 항목	지원 대상
농업 지원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자금(슈퍼L자금) 경영체 육성 강화 자금	농지 등의 취득, 농기구 및 시설 정비 등의 농업 부채 정리 자금 등이 필요한 농업인
	청년 등 귀농 자금	인증(認定)된 신규 귀농 자금
	농림어업 시설 자금· 농림어업 경영 자본 강화 자금	신규 사업 육성을 위한 시설 및 기계 취득, 농산물 가공 판매 시설 정비, 시험연구시설 정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자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촉진 자금	스마트 농기계 구입, 스마트 농기계 양산 제조라인 정비 등에 자금이 필요한 자
임업 지원	임업 기반 정비 자금· 임업 경영 육성 자금	인증(認定)된 산림사업계획 작성자 등(임업 경영의 규모화 및 효율화 도모)

74)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日本政策金融公庫 農林水産事業のご案内 2025, 2025.7, 3-4.

구분	용자 항목	지원 대상
	입업 구조 개선 사업 추진 자금·중산간 지역 활성화 자금	임산물 처리가공이나 유통 시설을 도입·개선하려는 사업 자, 산림 레크리에이션 시설 설치가 필요한 자
어업 지원	어업 경영 개선 지원 자금	인증(認定)된 어업인으로 어구 및 어업 시설 정비, 어선 개 조·취득이 필요한 자
	어업 기반 정비 자금	어업인, 어업협동조합 등 어장 개량·조성·정비를 도모하는 자
식품 산업	식품안전공급시설 정비 자금	식품 제조·가공, 유통의 합리화 및 고도화를 도모하는 사 업자
	식품 유통 개선 자금	농축 수산물 유통 시스템 정비
정책 지원	농림수산물 수출 기반 강화 자금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자
안전망	농림어업 세이프티넷 (안전망) 자금	재해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된 자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日本政策金融公庫 農林水産事業のご案内 2025, 2025.7, 19-20. 재구성.

중소기업사업본부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자
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장기 자금 수요를 대출, 신용보증, 증권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충족시키고, 설비투자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사업본부의 대표적인
용자 항목과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⁷⁵⁾

[표 V-5] JFC 중소기업사업본부 용자 항목과 지원 대상

구분	용자 항목	지원 대상
세이프티넷 (안전망)	일반 대출	재해나 대형 기업 도산 등 경영환경이나 금융 환경 변 화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 자금	일본의 경제성장 및 사회 과제 해결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타트업
	신사업 육성 자금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신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자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진출·사업 재편 자금	해외 직접 투자, 수출 확대, 해외 진출에 따른 사업 재편 추진 기업
	크로스보더 대출	일본 회사(중소기업자 등)와 공동으로 경영 혁신, 지역경 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는 태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멕시코 해외 현지 법인

75)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日本政策金融公庫 中小企業事業のご案内 2025, 2025.7, 3-5.

구분	용자 항목	지원 대상
기업 회생	기업 회생 자금	중소기업 활성화 협의회 등의 관여를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기업
사업 승계 지원	사업 승계·통합·활성화 지원 자금	사업 승계(M&A 포함)를 추진하거나 경영권 통합을 도모하는 기업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日本政策金融公庫 中小企業事業のご案内 2025, 2025.7, 10-18, 27-29. 재구성.

나. 채무자 보호

1) 신대금업법제를 통한 대부업 규제 강화

일본 정부는 2006년 12월 20일 「대금업법(貸金業法)」, 「출자법(出資法)」, 「이자제한법(利息制限法)」의 개정법으로 구성된 ‘신대금업법제’를 공포하고, 최고 금리 인하 및 과잉 대부 규제를 강화하였다. 2006년 12월 20일 공포된 개정법은 다섯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0년 6월 18일 전면 시행되었다.⁷⁶⁾

「대금업법」⁷⁷⁾은 1983년 대부업 등록 제도와 규제 도입을 통해 대부업의 적정한 활동을 촉진하고, 자금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6년 개정된 「대금업법」은 지나친 차입 및 대출 방지를 위해 차입 잔고가 연 수입의 1/3을 넘는 경우 신규 차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차입 시 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대금업법」상의 금리 상한을 29.2%에서 차입 금액에 따라 15~20%로 인하하였으며, 대금업취급주임자(법령 준수의 조언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을 득한 자)를 선임, 영업소에 배치하도록 하여 대금업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였다.⁷⁸⁾

「출자금 유치, 예탁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출자법」은 1953년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0년 6월 18일 개정법의 시행으로 금리 상한이 20%까지

76) 이종인, 일본의 서민금융제도와 소비자문제 :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비교분석, 소비자문제연구, 38, 한국소비자원, 2010.10, 61.

77) 제정 당시 「대금업규제법(貸金業規制法)」이었으나 2007년 12월 19일부터 「대금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8) 일본 금융청(金融庁), 貸金業法のキホン, (<https://www.fsa.go.jp/policy/kashikin/kihon.html>, 검색일: 2026.4.3.), 일본대금업협회(日本貸金協会), 貸金業法の概要, (https://www.j-fsa.or.jp/association/money_lending/law/overview.php, 검색일: 2026.4.3.)

인하되어, 20%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부업자는 위법행위에 따른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⁷⁹⁾

1954년 소비자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 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2010년 6월 18일 개정법의 시행으로, 10만 엔 미만은 연리 20% 이하, 10만~100만 엔은 연리 18% 이하, 100만 엔 이상은 연리 15% 이하로 금리를 제한하였다. 초과분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가 되어 값을 의무는 없다. 다만, 「출자법」과 달리 형사적인 벌칙 조항이 없는 민사적 강행규정이다.⁸⁰⁾

2) 사적 채무조정 제도

일본의 채무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사적 채무조정인 임의정리(任意整理)와 공적 구제 제도인 특정 조정, 개인회생, 자기 파산 등이 있다. 임의정리는 다중채무 문제 해결에 최우선시되는 방법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를 통해 사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⁸¹⁾

일본신용상담협회(Japan Credit Counseling Organization, 이하 JCCO)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임의정리를 수행하는 정부 위탁 공익재단법인이다.⁸²⁾ 주로 신용카드(카드론)를 중심으로 다중채무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채무조정 비용은 무료이며, 변호사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교섭을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 JCCO의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의 금리 상한(연 15%~20%)을 초과하는 채무액의 이자를 교섭을 통해 감액한 후, 3~5년의 상환기간 동안 채무자가 매달 일정액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한다.⁸³⁾ 임의정리 외의 채무정리(개인회생·파산)가 권장되는 경우, JCCO에서 채무자에게 변호사회 등의 상담처를 제안한다.⁸⁴⁾

79) 사법서사법인 스기야마사무소(司法書士法人 杉山事務所), 出資法(しゅっしほう)とは, (<https://sugiyama-saimuseiri.com/words/syusshihou/>, 검색일: 2026.4.3.)

80) 일본대금업협회(日本貸金協会), 5 お借入れの上限金利は、年15%~20%です, (https://www.j-fsa.or.jp/association/money_lending/law/maximum_interest_rate.php, 검색일: 2026.4.3.)

81) 민혜숙, 주요 선진국 사적 채무조정 사례 및 시사점, 한국자산관리공사, 2015, 145-146.

82) 그린사법행정법인(グリーン司法書士法人), 借金をなくせる任意整理とは? メリット・デメリットや向いている人, (<https://green-osaka.com/>, 검색일: 2026.4.3.)

83) 도쿄변호사회(東京弁護士会), 任意整理, (<https://www.toben.or.jp/>, 검색일: 2026.4.3.)

84) ASIRO, 日本クレジットカウンセリング協会が債務問題を解決しよう! 無料相談の方法とメリット, (<https://asiro.co.jp/>, 검색일: 2026.4.3.)

다. 금융 접근성 개선

세계은행(World Bank)의 Global Findex Database 2025에 따르면, 일본의 15세 이상 성인의 계좌 보유율은 99%, 휴대전화 보급률은 94%, 지난 3개월간 인터넷 사용 비율은 83%이다.⁸⁵⁾ 일본의 포용적 금융 문제는 성인의 은행 계좌 보유율이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경미한 수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이용 편의성과 관련된 포용적 금융의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⁸⁶⁾

일본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9.4%에 이르렀으며,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의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치매 고령자 증가 추세에 따라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744만 명,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15조 엔(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0.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⁸⁷⁾

고령자 고객을 위해 전국은행협회는 2021년 2월 「금융거래의 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金融取引の代理等に関する考え方)」을 발표하였다.⁸⁸⁾ 가이드라인에서는 무권(無權) 대리 거래를 본인의 인지능력이 부족하면서 성년후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는(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본인의 이익에 적합함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의뢰에 응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객의 예금 인출, 투자신탁 해약 등에 있어 친족 등 대리권이 없는 무권(無權) 대리인의 거래 요청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인지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재산 보호 관점에서 친족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을 지정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설명하고 있다.⁸⁹⁾

한편, 일본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2024년 10월 말 기준 약 23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이는 증가하는 추세다.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외국인 인재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일본인과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수용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외국인 인재 수용 및 공생을 위한 종합 대책(外国人材の受入れ・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을 2018년 12월 발표하였다. 2025년 개정판은 쉬운 일본어를 포함한 16개 언어로 표기된 외국인용 리

85) World Bank Group,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25, 2025, 297.

86) 水口 毅, 我が国における金融包摂の課題と対応状況. 일본 KPMG, 2021.5.7, 1.

87) 水口 毅, 我が国における金融包摂の課題と対応状況. 일본 KPMG, 2021.5.7, 3, 이병관, 전국은행협회, 고령고객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금융연구원, 2021.5, 1-2.

88) 이병관, 일본 전국은행협회, 고령고객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금융연구원, 2021.5, 1-2.

89) 전국은행협회(全国銀行協会), 金融取引の代理等に関する考え方および銀行と地方公共団体・社会福祉関係機関等との連携強化に関する考え方(公表版), 2021.2.18, 1-6.

플릿의 배포 촉진, 외국인이 자금 세탁이나 계좌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실시 등 외국인의 원활한 금융기관 이용을 위한 정책을 기재하고 있다.⁹⁰⁾

또한 금융청은 2020년 6월에 제정된 「청각장애인 등의 전화 이용 원활화에 관한 법률(聴覚障害者等による電話の利用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공 인프라인 ‘전화 릴레이 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⁹¹⁾ 전화 릴레이 서비스란 통역 오퍼레이터가 청각·언어 장애인의 수어 또는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 비장애인과 실시간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⁹²⁾

일본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전과 인구 감소로 인해 우체국을 제외한 민간 금융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기초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44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우정민영화(우체국 민영화)로 탄생한 우체국의 자회사인 일본우편저축은행(ゆうちょ銀行)과 일본우편생명보험(かんぽ生命)은 일본 전국의 2만 4천 개의 우체국을 통해 금융 소외 기초지자체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금 및 송금, 생명보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⁹³⁾

라. 금융 교육

금융 교육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지식과 판단력(금융 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일본은 금융청, 금융홍보중앙위원회, 문부과학성 등 정부 주도하에 금융 교육 지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금융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소비자청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 내 소비자 교육 등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청과 관계 당국, 일본은행 산하 금융홍보중앙위원회 및 각 지역 금융홍보위원회, 비영리조직 등이 주도적으로 금융 교육을 수행한다.

90)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外国人材の受入れ・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令和7年度改訂), 2025, 1, 31.

91) 일본 금융청(金融庁), 外国人材の受入コロナを乗り越え活力ある経済社会を, 2021.8.31, 74-76.

92) 일본재단 전화릴레이서비스(日本財団電話リレーサービス), 電話リレーサービスとは, (<https://www.nftrs.or.jp/about>, 검색일: 2026.4.3.)

93) 일본우편저축은행(ゆうちょ銀行), お客さま・マーケット お客さま保護, (<https://www.jp-bank.jp/anpost.jp/sustainability/social/customer/protection/>, 검색일: 2026.4.3.), 伊東良太, 郵政民営化と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の現状: 郵便料金の見直しの動き, 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立法と調査, 469, 2024.9, 144-145, 일본 우정민영화위원회(郵政民営化委員会), JPビジョン2025参考資料(案), 2024, 71.

그러나 유관 기관 간 내용 중복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중립적인 금융 교육 추진을 위해 「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金融サービスの提供及び利用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하여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apan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rporation, 이하 J-FLEC)를 2024년 4월 설립하였다. J-FLEC는 금융청의 감독을 받는 기구로 금융홍보중앙위원회, 전국은행협회, 일본증권업협회가 주축이 되어 출범하였으며,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⁹⁴⁾

J-FLEC은 강사 파견, 세미나 개최, 개별 상담 지원, 교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강사 파견 사업은 금융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 전반을 강의하기 위해 J-FLEC 인증 어드바이저 또는 활동 실적이 검증된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강의료와 교통비는 J-FLEC에서 지원하며, 연말연시(12월 29일~1월 10일)를 제외하면 주말과 공휴일에도 파견이 가능하다. J-FLEC은 교육 대상을 금융 문해력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중견사회인, 베테랑사회인 등 5개 연령층으로 구분하였다.⁹⁵⁾

[표 V-6] J-FLEC의 연령별 금융 교육

연령	교육 내용
초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돈에서 배우는 돈 이야기 - 용돈 사용법, 저축 방법, 돈의 흐름, 금융 관련 문제를 강의·퀴즈·게임 등 참여형 수업으로 학습
중·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이 되기 전에 배워두고 싶은 돈 이야기 - 수입·지출 관리, 자산 형성, 신용카드와 학자금 대출 구조 및 유의점 등
대학생·사회초년생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인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돈 이야기 - 가계 관리, 급여 명세서 이해, 자산 형성, 보험, 금융 문제 예방 등
중견사회인 (30~4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위해 알고 싶은 돈 이야기 - 가계 진단, 자산 형성, 전문가 조언을 활용한 설계, 보험·대출·금융 문제 예방 등
베테랑사회인 (50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전후에 알아두고 싶은 돈이야기 - 정년 후 생활 준비, 연금, 퇴직금, 세금 구조, 상속·증여 등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경제·금융교육 운영 현황, 2025, 63, 배순영, 5070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변화와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2024,6, 20. 재구성.

94) 송인호 외, 영국, 일본, 싱가포르의 경제·금융 교육 현황, 한국개발연구원, 2025.5, 32, 45, 한국교육개발원, 경제·금융교육 운영 현황, 2025, 58.

95) 한국교육개발원, 경제·금융교육 운영 현황, 2025, 63, 배순영, 5070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변화와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2024,6, 20.

또한 금융청은 2025년 「금융행정방침」에서 J-FLEC 등을 통해 청년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금융 문해력 향상을 도모하고,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제도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⁹⁶⁾ NISA를 통해 국민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각자의 생애 단계에 맞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품의 다양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⁹⁷⁾

96) 일본 금융청(金融庁), 2025事務年度 金融行政方針, 2025.8.29, 7.

97) 이승주, 일본의 新 NISA, 자산증식을 위한 평생 비과세제도, 현안, 외국에선?, 83, 국회도서관, 2024.6.13, 1-2.

VI. 중국

-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 3 주요 정책 사례

1.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경과

중국에서 포용적 금융은 ‘푸웨이 진룽(普惠金融)’이라고 하며, 금융서비스의 혜택(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普)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⁹⁸⁾

공식적으로 ‘포용적 금융 발전’은 2013년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고, 국가 전략으로 지정되었다. 이어 2015년 양회⁹⁹⁾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포용적 금융의 대대적 발전이 제시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이 「포용적 금융 발전 추진 계획(推进普惠金融发展规划)(2016-2020)」(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포용적 금융은 ‘기회균등과 상업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모든 사회 계층과 및 금융서비스 수요자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서비스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서비스 대상은 중소기업, 농민, 도시 저소득층, 빈곤층,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 집단이다.

중국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은 단순한 서민금융 정책이 아니라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국가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서비스 제공 주체의 다원화, 서비스 범위 확대, 금융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결제 확산 등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인당 은행 계좌 수 증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 확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서 중국의 포용적 금융 발전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¹⁰⁰⁾

2017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형 상업은행이 포용적 금융사업부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대형 국유은행이 선도적으로 이를 시행하며, 차별화된 평가제도와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자금조달난과 고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후 2023년 국무원은 「포용적 금융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실시 의견(国务院关于推进普惠金融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고품질 포용적 금융 체계’ 구축을 요구하였다.¹⁰¹⁾

98) 서봉교, 중국의 포용금융 발전과 중국 은행 포용금융의 현황, 금융, 2028.12, 777.

99) 중국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100)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刘桂平: 关于中国普惠金融发展的几个问题, (<https://www.pbc.gov.cn/redianzhuanti/118742/4122386/4122510/4319473/index.html>, 검색일: 2026.4.3.),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政策法规 国务院关于印发推进普惠金融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 (https://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1/t20160118_1651608.htm, 검색일: 2026.4.3.)

2026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重中之重)로 계속해서 간주하고, 농업 강화·농민 지원·농민 소득 증대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중소·영세기업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¹⁰²⁾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의 「2025년 제3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2025年第三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과학기술(11.8%), 녹색(22.9%), 포용적 금융(11.2%), 노인 돌봄(58.2%), 디지털경제 산업(12.9%) 분야 대출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여 전체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또한 농촌 활성화를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 등에 힘입어 실물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³⁾

2. 정책 추진 체계 및 전략

가. 추진 체계

중국의 포용적 금융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인민은행, 재정부 등이 정책을 설계한다. 정책의 규제와 감독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한다. 정책 실행은 국유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당하며, 기술 플랫폼이 이를 증폭시키는 타당한 방식의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된다.

[표 VI-1] 중국 포용적 금융 추진 체계

구분	기관
정책 방향 제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정책 설계	인민은행(통화·금융 정책), 재정부(재정 지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거시·산업 정책), 지방정부
규제·감독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실행	국유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등), 정책은행(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수출입은행 등), 중소 금융기관

101) 인민일보(人民日报), 国务院印发《关于推进普惠金融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https://paper.people.com.cn/rmrb/html/2023-10/12/nw.D110000renmrb_20231012_8-01.htm, 검색일: 2026.4.3.)

102) 인민일보(人民日报), 政府工作报告-2026年3月5日在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上, (<http://lian ghui.people.com.cn/2026/n1/2026/0313/c461827-40681711.html>, 검색일: 2026.4.3.)

103) 신화통신(新华通讯), 巩固优化普惠金融服务, (<https://www.news.cn/money/20251124/145e78c847674866b09e26e511b453a5/c.html>, 검색일: 2026.4.3.)

구분	기관
기술·플랫폼	국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 차세대 온라인 금융서비스 포털 구축,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핀테크 발전 지원 및 건전성 규제 강화, 고령자·장애인·소수민족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자료: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务院关于印发推进普惠金融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10/content_6908495.htm, 검색일: 2026.4.3.)을 바탕으로 재구성.

나. 추진 전략

1) 「포용적 금융 발전 추진 계획(2016-2020)」

2015년 국무원은 「계획」을 통해 포용적 금융 업무의 수행 원칙, 목표 및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포용적 금융서비스의 불균형, 체계 미비, 법률·제도의 불완전, 금융 인프라 부족, 상업적 지속가능성 미흡을 지적하며, 2020년까지 포용적 금융서비스와 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은행·신형 금융기관·보험사의 기능을 활용하여 다원적 기관 체계 구축,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술·인터넷 활용, △농촌 금융 인프라(결제 환경·신용정보·통계 등) 확충, △법·제도 정비와 소비자 보호 강화, △통화·신용 정책, 차별화된 감독, 재정·세제 혜택, 지방정부 참여를 통한 금융 자원의 포용적 금융 유입 등을 추진한다.¹⁰⁴⁾

2) 「중·대형 상업은행 포용적 금융사업부 설립 시행 방안」

2017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은감회)¹⁰⁵⁾는 「중·대형 상업은행 포용적 금융사업부 설립 시행 방안(大中型商业银行设立普惠金融事业部实施方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은 2017년 정부업무보고를 실행하기 위해 중·대형 국유은행 본부에 포용적 금융사업부(普惠金融事业部)를 연내 설립하고, 소규모·영세기업, 삼농(농업·농촌·농민), 창업·혁신 집단 및 빈곤 퇴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였다. 포용적

104)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政策法规, 国务院关于印发推进普惠金融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 (https://ah.mof.gov.cn/zhengcefagui/201609/t20160909_2414038.htm, 검색일: 2026.4.3.)

105) 은감회(2003~2018)는 보험업 감독을 포함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2018~2023, 약칭 은보감회(银保监会)로 통합되었다가, 2023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 금융 기능을 강화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약칭 금융감독총국(金融监管总局))으로 재편되었다.

금융사업부는 은행의 포용적 금융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 규정 수립, 상품 개발 및 위험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은행이사회 내에 포용적 금융개발위원회 또는 포용적 금융경영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전문위원회를 지정하여 포용적 금융 사업의 개발 전략 및 기본 관리시스템 수립, 포용적 금융 사업 부문의 연간 운영 계획 및 성과 평가 방법 검토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¹⁰⁶⁾

정책 실행을 위해 은행이 소규모·영세기업, 삼농, 빈곤 퇴치 등 업무에 대한 부실 대출 허용도를 적절히 높이게 허용하고, 직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였다. 농가 소액 대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포용적 금융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소규모·영세기업 및 삼농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대위변제 보상, 소액 대출 보증보험, 농업보험 증권 담보 대출 등 ‘은행-보험’, ‘은행-보증’ 협력 모델을 보급하여 포용적 금융 업무의 위험 분담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방안」은 2025년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전신: 은감회)이 중국 인민은행과 함께 발표한 「은행업·보험업 포용적 금융 질적 발전 실시 방안에 관한 통지(银行业保险业普惠金融高质量发展实施方案的通知)」(이하 은행업·보험업 통지)로 이어진다. 「은행업·보험업 통지」는 향후 5년간 고품질 포용적 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포용적 금융이 공동 번영 촉진에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¹⁰⁷⁾

3) 「포용적 금융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실시 의견」

중국 국무원은 2023년부터 향후 5년 동안 고품질의 포용적 금융 체계의 기본을 구축하기 위해 기초 금융서비스 보급 확대, 경영 주체의 자금 조달 편의성 제고, 포용적 금융 지원 메커니즘 완비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소규모 기업과 중소 경영 주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과 서비스 체계를 최적화하고, 농촌 지역 금융지원 강화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의료, 교육, 주거, 고령화 대응 등 민생 분야에서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뒷받침

106) 중국 선전(深圳) 시정부, 银监会发布《大中型商业银行设立普惠金融事业部实施方案》, (http://www.sz.gov.cn/cn/xxgk/zfxxgj/zcfg/content/post_8979022.html, 검색일: 2026.4.3.)

107)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办公厅 中国人民银行办公厅关于印发《银行业保险业普惠金融高质量发展实施方案》的通知, (<https://www.nfra.gov.cn/cn/view/pages/ItemDetail.html?docId=1215002&itemId=878&generalType=1>, 검색일: 2026.4.3.)

하는 방향으로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확대한다. 금융 시스템의 구조 개혁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포용적 금융기관 체계의 다층적 구축과, 은행 간 건전한 경쟁 유도 등을 추진한다. 농촌 주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보험(普惠保險) 체계를 구축하고, 채권시장의 활용도를 높이며 디지털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중·소형 은행 개혁 및 리스크 해소, 거버넌스 체계 개선, 불법 금융 활동 단속 등을 수행하며, 소비자 금융 교육 강화, 포용적 금융의 법치 수준 제고 등을 추진한다. 포용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책적 유도 및 거버넌스 협력 강화, 중점 분야의 신용정보 공유, 위험 분담 및 보상 메커니즘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한다.¹⁰⁸⁾

3. 주요 정책 사례

가.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 기금

2019년 9월 중국 재정부는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 기금의 관리를 표준화하여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고, 포용적 금융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 기금 관리 방법(普惠金融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이하 관리 방법)을 제정하였다. 2023년 「관리 방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5년간 시행된다.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 기금은 중앙정부가 포용적 금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특별 이전지급 기금이다.

재정부, 지방 재정부처, 재정부 각 지역 감독국이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재정부는 특별 기금 정책 설계, 예산 편성, 기금 배분 및 하달, 예산 성과관리 실시, 지방의 특별 기금 관리 강화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 재정부처는 특별 기금의 조직적 시행, 신청 및 배분, 사용 감독, 예산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부 각 지역 감독국은 직무 범위 및 재정부 관련 요구에 따라 특별 기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 기금의 용도는 각 성(省)¹⁰⁹⁾의 창업담보대출 이자 지원,

108)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国务院关于推进普惠金融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310/content_6908496.htm, 검색일: 2026.4.3.)

109) 중국의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및 위구르 생산건설병단을 통칭한다. 직할시는 성(省)과 동급의 행정단위로 국무원이 직접 관할하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충칭(重庆) 네 곳이다. 계획단열시란 행정적으로는 해당 성(省)에 속하지만, 중앙정부의 경제·재정 계획에서 '성(省)과 거의 동급으로' 별도 관리되는 도시를 말한다.

중앙정부 지원 포용적 금융 발전 시범구(普惠金融发展示范区) 조성 및 지원, 농촌 금융기관 수수료 보조 등이다.¹¹⁰⁾

1) 창업담보대출 이자 지원

창업담보대출은 정부 지원 금융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고, 취급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며, 중앙 및 지방 재정 당국이 이자 보조를 제공하여 개인의 창업 또는 소규모·영세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담보대출에 대하여 재정 당국은 대출 이자의 50%를 지원한다. 연장 또는 연체된 대출은 원칙적으로 이자 보조를 제공하지 않으며,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환 실적이 우수하고, 고용 창출 능력이 뛰어나며, 창업 계획이 우수한 차입자 또는 기업은 대출 만료 후에도 대출 및 이자 보조금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누적 신청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이 가능한 개인 및 기업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표 VI-2] 중국 창업담보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 자격

대상	자격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등록 실업자,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포함), 전역 군인, 형기 만료자, 대학 졸업생(해외 유학 귀국자 포함), 과잉 생산능력 해소 기업 근로자 및 실업자, 귀향 창업 농민공, 온라인 판매자, 탈빈곤 인구, 창업 농민 등 신청자 및 배우자가 학자금 대출, 탈빈곤 인구의 소액 신용 대출,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5만 위안 이하 소액 소비 대출(신용카드 소비 포함)을 제외한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소규모·영세기업 대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채용 인원이 전체 재직 인원의 10% 이상(100인 초과 기업은 5% 이상)이고,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 임금 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법·부실 신용 기록이 없어야 함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담보대출 중 개인 대출(30만 위안 이하, 3년 이내), 기업 대출(400만 위안 이하, 2년 이내), 금리 상한(지역별 LPR¹⁾ 기준 차등 적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 1) LPR(Loan Prime Rate, 贷款市场报价利率)은 중국 은행이 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다.
 자료: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网站信息推送 关于印发《普惠金融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的通知, (https://www.mof.gov.cn/jrttts/202309/t20230914_3907222.htm, 검색일: 2026.4.3) 재구성.

110)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网站信息推送 关于印发《普惠金融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的通知, (https://www.mof.gov.cn/jrttts/202309/t20230914_3907222.htm, 검색일: 2026.4.3.)

2) 포용적 금융 발전 시범구 조성 및 지원

지역 실정에 맞게 특색 있는 포용적 금융 발전 시범구(普惠金融发展示范区) 조성을 지원하고, 소규모·영세기업 및 삼농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등급별로 각 성에 장려·보조금을 지급한다. 각 성은 매년 자율적으로 1~3개의 시범구를 선정하고, 시범구는 장려·보조금을 소기업·농업 지원 대출 이자 보조 및 리스크 보상, 금융보증기관의 농업 관련 업무 수수료 보조, 자본금 보충 등 포용적 금융 사업에 사용한다.

[표 VI-3] 중국 중앙정부가 포용적 금융 발전 시범구에 지급하는 장려·보조금

(단위: 개, 만 위안)

지역	1등급		2등급		3등급	
	성(省)	장려·보조금	성(省)	장려·보조금	성(省)	장려·보조금
동부지역	2	6,000	4	4,500	2	3,000
중부 및 동북지역	3	10,000	5	7,500	3	5,000
서부지역	3	10,000	7	7,500	3	5,000
계획단열시	2	3,000	3	2,000	-	-

주: 각 성(시범 구역)의 포용적 금융 개발 성과 순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자료: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网站信息推送 关于印发《普惠金融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的通知,
https://www.mof.gov.cn/jrttts/202309/t20230914_3907222.htm, 검색일: 2026.4.3.)

나. 디지털 포용적 금융

2016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G20 디지털 포용적 금융 고위급 원칙」¹¹¹⁾이 발표되고 디지털 포용적 금융이라는 개념이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디지털 포용적 금융은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블록체인(blockchain) 등의 기술이 금융 분야에 적용되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전체적인 발전 기간은 짧은 편이다.

중국 디지털 포용적 금융의 발전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금융 통합의 초기 세대 단계로, 1995년 중국 최초의 온라인 은행(Safety

111)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20 High-Level Principles for Digital Financial Inclusion summary, 2016, 1.

First Internet Bank)이 설립되고, 금융기관은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 관리 모델을 도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인터넷 결제(third-party internet payments) 등의 출현으로 디지털 포용적 금융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단계다. 단순한 결제 및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재테크·보험·금융·신용 대출이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금융과 결합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로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와 매개체가 생성되었으며 포용적 금융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표준화되었다.¹¹²⁾

중국 인민은행은 2022년 「2022~2025년 핀테크 발전 계획(金融科技发展规划(2022-2025年))」(이하 계획)을 발표하고,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금융 디지털 전환과 현대적 금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 계획을 통해 국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세대 온라인 금융서비스 포털을 조성하는 등 기술·플랫폼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전반에 디지털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중국 핀테크 역량과 핵심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였다.¹¹³⁾

「계획」은 8대 과제로 △핀테크 거버넌스 강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친환경·고효율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금융망 구축, △디지털 기술의 금융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경영 활성화, △금융서비스 채널 다양화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과학적인 금융 감독, △핀테크 인재 양성 확대를 제시하였다.¹¹⁴⁾

같은 해 「소규모·영세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몇 가지 조치(支持小微企业融资的若干措施)」에서 금융기관이 세무·물류·거래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 대출을 수행하도록 장려하였고, 직무상 성실 이행 면책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포용적 금융 참여에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¹¹⁵⁾

112) 왕성범, 중국 디지털 포용적 금융이 주민 소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2, 17-20.

113)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中国人民银行关于印发《金融科技发展规划(2022-2025年)》的通知, (<https://www.pbc.gov.cn/zhengwugongkai/4081330/4406346/4693549/4470403/index.html>, 검색일: 2026.4.3.)

114) 중국전문가포럼(CSF), [정책 분석] 中 인민은행, 핀테크 발전을 위한 8대 목표 제시,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44908&mid=a20100000000, 검색일: 2026.4.3.)

115)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等八部门关于印发《支持小微企业融资的若干措施》的通知, (<https://www.nfra.gov.cn/cn/view/pages/governmentDetail.html?docId=1210257&itemId=878&generaltype=1>, 검색일: 2026.4.3.)

디지털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례로 텐센트, 미중은행, 광대은행 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텐센트

중국 IT기업 텐센트(腾讯)가 운영하는 디지털 보험 플랫폼인 텐센트 위슈어(腾讯微保, Tencent WeSure)는 2022년부터 텐센트 당위원회, 텐센트 자선재단, 위챗페이, 그리고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사랑과 보호 공익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공익, 보험, 인터넷을 결합한 지원 모델을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단 1센트 또는 1위안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을 내고 고액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저우(广州)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고, 점차 허위안(河源), 구이린(桂林), 바이세(百色)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허위안에서는 이 모델을 취약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완화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¹¹⁶⁾

2) 미중은행

미중은행(微众银行, WeBank)은 온라인 금융 보증 서비스 모델인 '정부(政)-은행(银)-보증(担)'을 개발하여, 기업이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몇 분 만에 신용 한도를 부여받고 심사 및 대출 실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델은 정부, 은행, 보증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 보증 프로세스를 재구성하여 자금 조달 주기를 크게 단축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 모델을 활용하여 2025년 12월 말 기준, 미중은행은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57개의 금융 보증 회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누적 1,900억 위안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17만 개 이상의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과 실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¹¹⁷⁾

116) 대중신문(大众报业), 普惠金融向深向实, 腾讯微保创新模式惠及万千群众, (https://jining.dzwww.com/yl/xt/202603/t20260316_17543409.htm, 검색일: 2026.4.3.)

117) 십언만보(十堰晚报), 微众银行推动普惠金融机制重塑 数字化重构“政银担”协同逻辑, (<https://baijiahao.baidu.com/s?id=1859353960073046487&wfr=spider&for=pc>, 검색일: 2026.4.3.)

3) 광대은행

광대은행(光大银行)은 2024년 6월 기준 중국 내 1,313개 영업망을 보유한 상업은행으로, 2024년 「디지털 금융 사업 계획(中国光大银行数字金融工作方案)」을 수립하고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대 클라우드 결제(光大云缴费)’는 수도, 가스, 사회보험, 교육비 등 1만 7천 개 이상 공공요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산시성, 허베이성 등 30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도시·농촌 주민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지원한다. 각종 기관 및 인터넷 플랫폼(디지털 위안화 앱, 위챗, 알리페이, 메이투안, 화웨이 등 840여 개 협력 기관)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8억 명(2023년 기준)의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클라우드 결제 어플리케이션에 ‘고령자 친화 모드’를 도입하여,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간편한 화면 구성 등 접근성을 강화하고, 영상·음성·텍스트 상담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어음(无感贴现)’ 서비스를 출시하여 어음 발행, 인수, 지급, 할인, 자금 이체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였다. 이를 통해 수취인은 즉시 어음을 수령할 수 있으며, 거래대금 지급 효율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었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능형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실물 경제 지원과 고품질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¹¹⁸⁾

118) 중국일보(中国日报), 打好惠民利企组合拳 光大银行发力数字金融赋能经济发展, (<https://cn.china-daily.com.cn/a/202408/01/WS66ab5ed1a310054d254eb190.html>, 검색일: 2026.4.3.)

참고문헌

- 강성호, 이소양. (2024.12.23). 면세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1-4.
- 김경중. (2018). 美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포용적 금융 사례조사. 예금보험공사, 76.
- 민혜숙. (2015). 주요 선진국 사적 채무조정 사례 및 시사점. 한국자산관리공사, 145-146.
- 배순영. (2024.6). 5070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변화와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20.
- 서봉교. (2018.12). 중국의 포용금융 발전과 중국 은행 포용금융의 현황. 금융, 777.
- 송인호 외. (2025.5). 영국, 일본, 싱가포르의 경제·금융 교육 현황. 한국개발연구원, 45.
- 손희영, 박의서, 강만수. (2015). 서민금융의 햇살론 대환자금 및 바뀐드림론 비교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4), 697.
- 심윤보. (2024.5.27). 英, 올해 은행 공동점포 100개까지 확대 계획. 하나은행 금융연구소, 1-2.
- 왕성범. (2023.2). 중국 디지털 포용적 금융이 주민 소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20.
- 이경진 외. (2010.8). 주요국 서민금융체계 비교 및 시사점, 하나은행 금융연구소, 105.
- 이병관. (2021.5). 일본 전국은행협회, 고령고객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금융연구원, 1-2.
- 이수진. (2025.10). 해외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금융브리프 포커스. 34(20), 11.
- 이승주. (2024.6.13). 일본의 新 NISA, 자산증식을 위한 평생 비과세제도. 현안, 외국에 선?, 83, 1-2.
- 이종인. (2010.10). 일본의 서민금융제도와 소비자문제 :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비교분석. 소비자문제연구. 38, 58, 60-61.
- 정세창. (2023).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한 금융보험교육 정책 시사점, 보험학회지. 137. 9-10.
- 한국교육개발원. (2025). 경제·금융교육 운영 현황, 58.
- 한지형, 김경태. (2024.8). 해외 주요국 재무·금융교육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71-72, 78-79, 84-85.

[해외문헌]

- Arashiro, Zuleika. (2010.8). Financial inclusion in Australia: Towards transformative policy. Brotherhood of St. Laurence and University of Melbourne Centre for Public Policy, 3.
- Banque de France. (2025.6.27). Observatoire de l'inclusion bancaire Rapport Annuel 2024.
- Banque de France. (2025.6). Cadre juridique: principaux textes et articles de référence.
- Banque de France. (2025). Connaître les dispositifs d'inclusion financière à destination des particuliers, 8-9.
- Bpifrance. (2025.4.16). Le Fonds de Cohésion Sociale, géré par Bpifrance au nom et pour le compte de l'Etat joue un rôle fondamental dans l'inclusion économique et sociale et l'accès à l'entrepreneuriat pour les publics les plus fragiles.
- CDFI Fund. (2024). CDFI Program & NACA Program Financial Assistance Application Instructions, 125.
- CDFI Fund. (2022.10.13). SDL Program Fact Sheet, 1.
- CDFI Fund. (2022.3.25). The CDFI Fund: Empowering Underserved Communities, 2.
- CFE Fund. (2024.11). Bank On National Account Standards(2025-2026), 1.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3.12). Review of Financial Wellbeing and Capability programs - Consultation Paper, 10, 40.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6.12). Financial Wellbeing and Capability Guidelines Overview, 10.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4.10).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i-31.
- U.S.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2020). U.S.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20, 4.
- FDIC. (2024). FDIC National Survey of Unbanked and Underbanked Households Executive Summary, 2.
- FDIC. (2024). Economic Inclusion Strategic Plan, 1.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25.5.22). Financial Lives 2024 survey: Technical Report, 85.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25.5.16). Financial Lives 2024, 67.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25.5). Financial Lives 2024 survey: Cash savings: Selected findings, 4.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2016). G20 High-Level Principles for Digital Financial Inclusion summary, 1.

Kat Tretina. (2025.10.1). How Much Does Credit Counseling Cost?

OECD. (2015).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OECD/INFE Policy Handbook, 20.

Prabhakar, Rajiv. (2022.5.20). Financial inclusion. House of Commons Library, 4, 10-17.

The Treasury. (2022.2).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1, 6, 16-23.

World Bank Group. (2025).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25, 297.

伊東良太. (2024.9) 郵政民営化と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の現状: 郵便料金の見直しの動き. 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 立法と調査 469, 144-145.

出入国在留管理庁. (2025). 外国人材の受入れ・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令和7年度改訂), 1, 31.

金融庁. (2025.8.29). 2025事務年度 金融行政方針, 7, 11.

金融庁. (2021.8.31). 外国人材の受入コロナを乗り越え活力ある経済社会を, 74-76.

金融庁. (2020.8). 令和2事務年度金融行政方針(別冊)補足資料.

全国銀行協会. (2021.2.18). 金融取引の代理等に関する考え方および銀行と地方公共団体・社会福祉関係機関等との連携強化に関する考え方(公表版), 1-6.

日本政策金融公庫. (2025.7). 日本政策金融公庫 国民生活事業のご案内 2025, 3-4, 29-31.

日本政策金融公庫. (2025.7). 日本政策金融公庫 農林水産事業のご案内 2025, 3-4, 19-20.

日本政策金融公庫. (2025.7). 日本政策金融公庫 中小企業事業のご案内 2025, 3-5, 10-18, 27-29.

水口 毅. (2021.5.7). 我が国における金融包摂の課題と対応状況, 1, 3.

郵政民営化委員会. (2024). JPビジョン2025参考資料(案), 71.

[웹사이트]

미국 American Action Forum, <https://www.americanactionforum.org/>
미국 Bank On, <https://joinbankon.org/>
미국 CDFI 기금, <https://www.cdfifund.gov/>
미국 CFE 기금, <https://cfefund.org/>
미국 Consumer Compliance Outlook, <https://www.consumercomplianceoutlook.org/>
미국 FDIC, <https://www.fdic.gov/>
미국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https://joinbankon.org/>
미국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NFCC), <https://www.nfcc.org/>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https://www.fca.org.uk/>
영국 자금연금청, <https://maps.org.uk/>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영국 Professional Pensions, <https://www.professionalpensions.com/>
영국 Responsible Finance, <https://responsiblefinance.org.uk/>
영국 The Payments Association, <https://thepaymentsassociation.org/>
영국 Vouchsafe, <https://vouchsafe.id/>
일본 그린사법행정법인, <https://green-osaka.com/>
일본 금융청, <https://www.fsa.go.jp/>
일본 노무라증권, <https://www.nomura.co.jp/>
일본 대금업협회, <https://www.j-fsa.or.jp/>
일본 도쿄변호사회, <https://www.toben.or.jp/>
일본 사법서사법인 스기야마사무소, <https://sugiyama-saimuseiri.com/>
일본 우편저축은행, <https://www.jp-bank.japanpost.jp>
일본 전국은행협회, <https://www.zenginkyo.or.jp/>
일본재단 전화릴레이서비스, <https://www.nftrs.or.jp/>
일본정책금융공고, <https://www.jfc.go.jp/>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
일본 ASIRO, <https://asiro.co.jp/>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https://www.nfra.gov.cn/>

중국 국무원, <https://www.gov.cn/>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
중국 재정부, <https://www.mof.gov.cn/>
중국 중앙정부, <http://www.gov.cn/>
중국 선전시, <http://www.sz.gov.cn/>
중국 인민은행, <https://www.pbc.gov.cn/>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 <https://www.tresor.economie.gouv.fr/>
프랑스 공공서비스 포털, <https://www.service-public.gouv.fr/>
프랑스 정부, <https://www.info.gouv.fr/>
프랑스 중앙은행, <https://www.banque-france.fr/>
프랑스 존, <https://www.francezone.com/>
프랑스 Action Logement, <https://www.actionlogement.fr/>
호주 사회복지부, <https://www.dss.gov.au/>
호주 사회복지부 이전 장관, <https://formerministers.dss.gov.au/>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https://www.asic.gov.au/>
호주 Brotherhood of St. Laurence, <https://www.bsl.org.au/>
호주 Moneysmart, <https://moneysmart.gov.au/>
호주 National Debt Helpline, <https://ndh.org.au/debt-solutions/>
호주 Saver Plus, <https://saverplus.org.au/>
Forbes, <https://www.forbes.com/>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

[신문자료]

대중신문. (2026.3.16). 普惠金融向深向实，腾讯微保创新模式惠及万千群众.

신화통신. (2026.2.10). 光大银行启动“融生态 助科创”科技金融系列活动.

신화통신. (2025.11.24). 巩固优化普惠金融服务.

십언만보. (2026.3.11). 微众银行推动普惠金融机制重塑 数字化重构“政银担”协同逻辑.

인민일보. (2026.3.13). 政府工作报告-2026年3月5日在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上.

인민일보. (2023.10.12). 国务院印发《关于推进普惠金融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중국일보. (2024.8.1). 打好惠民利企组合拳 光大银行发力数字金融赋能经济发展.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IV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발간일 2026년 5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ISBN 979-11-6799-255-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6-002231-01
ISBN	979-11-6799-255-0(93350)